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이 끝나면 대학추천을 받지 못하여 진학할 수도 없고, 출신성분 때문에 당이나 국가, 군, 행정기관에 등용되지 못하여 이들 역시도 주로 탄광이나 광산등지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군포로나 그들의 2세들 중에서 우수한 대상이 있다해도 당이나 국가, 군, 사법안전, 행정기관에 등용하거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워 놓고 있어, 국군포로와 그들의 2세 대부분은 신분의 변화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국군포로 장무환씨가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에서 "북한에 두고 온 자녀 중에 학업이 우수한 자녀가 있었는데, 포로2세 신분때문에 추천을 받지 못해 대학 입학을 못했다"고 하면서 또 "포로2세들은 아버지 신분때문에 성장할수록 자포자기하고 비관하는 생을 살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자녀들의 교육은 이미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포로 2세들에게는 시집오거나 장가들려고 하지 않아, 대부분은 국군포로 자식들이나 출신성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역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후에도 배우자가 사고등으로 사망하여 혼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순용씨는 "북한에서 딸 넷을 출가시켰는데 그중 두명의 사위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다. 포로가 된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은 아버지로 인해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는 2세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고민꺼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양순용씨는 말했다.

5. 생존국군포로 실태

북한에 현재 살아있는 국군포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국군포로의 집단거주지는 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소재의 대략 광산 15곳과 임산(임업)사업소 3곳 등이라고 한다.

광산지대는 함경북도 온성·상화·주원·풍림탄광, 새별군(옛 경원군) 하면탄광, 은덕군(옛 경원·경흥군)의 아오지·고건원탄광, 회령군 학포·창평·유선탄광, 화성군(옛 명천군) 명간탄광과 함경남도의 단천시 김덕·용양

광산 및 양강도(옛 함경남도 일부와 평안북도 일부) 운흥군 운흥탄광, 자강도 만포광산 등이다. 임산사업소는 양강도 연사군의 석수·신양·삼포 임산사업소 등에 집단거주하고 있다고 한다.(25)

광부로 일하다가 1996년 귀순한 동용섭씨는 "함경남도 단천시 용양지구 광산에서 일하는 전체 인부 만여명중 천명정도가 국군포로 출신이며, 거기서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검덕광산에도 국군포로가 약 2천명 있다. 그중 절반이상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며 "연로보장한 이들 중 일부는 화전민이 되었고 일부는 이발공, 구두닦이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민군에 편입된 경우이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교화소나 특별수용소에 수용되어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증언했다.(26)

양순용씨는 "아오지·오봉탄광지역에 5백여명의 국군포로가 있었으며, 50~60명이 살아있다" 고 밝혔었다.(26)

북한에는 20개의 교화소에 총 88동의 수용시설이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약 2만5천여 평에 3만8천7백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교화소 중에는 포로전용 교화소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27)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국군포로들은 종전전후에 함경남·북등 북한에서 가장 후방지역으로 이송되어 영구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고, 그후 이들지역의 탄광과 임산사업소에 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이는 제4장 포로의 후송경로(그림1, P5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국군포로를 후방지역으로 이송하여 탈출을 방지하고, 집단수용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탄광에 투입하여 혹독한 강제노동을 시켰고, 45년동안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을 제한하여 현재도 이들지역에서 집단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

(25). 시사저널. 1997.10.16. P.49.와 기타 자료 취합.
(26). 동용섭, 양순용씨의 증언자료와 면담에서 발췌.
(27). 성곡논총.사단법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8 제29집 2권. p.445.

Ⅵ. 포로송환의 법적근거

1. 포로송환의 법적근거

1). 제네바협약

본래 조약은 당해 조약의 내용이 이미 국제관습화 되어있는 것이 아닌 한, 당해 조약의 형성에 참가하고 정식의 당사자가 된 국제법 주체만을 구속한다고 함은 조약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은 개정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제네바협약은 아직 국재관습법화 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전쟁기간중 제네바협약이라는 다자조약에 당사자가 되지 않은 남·북한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이협약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제네바협약 제2조 "본 협약당사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은 제네바협약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7월 4일과 7일에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과 이승만대통령은 "체포된 북한군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같은 해 7월 13일 북한외상 박헌영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은 전쟁포로와 관련한 제네바협정의 제원칙을 엄숙히 준수하겠다" 는 전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정부도 1952년 7월 13일에 주은래 외상 명의로 "제네바협약은 근본적으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중국은 그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제네바 당국자에게 통보했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뿐만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모두 제네바협약에 의해 구속되고,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1957년 8월 27일에 북한이, 1966년 8월 16일에 한국이 제네바협약에 뒤늦게 가입하였지만, 오늘날 우리정부가 북한이 제네바협약에 위반했다고 주

장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동 협약 제 118조에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적대행위의 종료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상기 취지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억류국은 전항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송환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어느 경우라도 채택된 조치는 포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당사자는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즉시 포로를 송환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네바협약은 제118조의 이행보장을 위해 충돌당사국의 이익보호를 임무로 하는 이익보호국(protecting powers)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남·북한은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익보호국의 협조와 보호로 포로송환을 위한 제118조의 이행을 상대방에 촉구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한국전쟁 휴전협정

한국전쟁 휴전협정(1953.7.23 서명) 제 3조 「전쟁포로에 관한조치」 제51항에 따르면 "휴전협정이 발효한 후 60일내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원하는 전체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집단에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는 규정에 의거 휴전협정의 쌍방인 국제연합과 북한·중국은 그들의 수용하에 있는 모든 포로를 송환해야 할 법적의무를 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포로문제를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대항해 온 것이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자면 한국은 휴전협정 제 51항을 근거로 포로송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국제연합의 명의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휴전협정의 부록인 포로교환협정(일명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제4조 제11항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 후 120일 이내에 피송환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고 또 정치회담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타의 처리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 자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전쟁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민간인으로

선포하며, - 중략 -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해산된 후 어느 때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시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속해 있는 곳의 당국들은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군포로의 송환을 정전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휴전협정에는 동 협정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북한의 포로송환거부 법적근거

1907년 헤이그협약, 1949년 제네바협약은 "포로를 자국에 대항하는 군복무에 종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군포로들을 인민군에 편입시켜 전투행위를 강요했을 뿐만아니라, 수용·대우·석방등 포로에 관한 국제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한 북한이 1998년 6월 18일 조평통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조선은 있지도 않은 납북자 송환에 대해 떠들면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는 남조선 군 포로와 민간인은 단 한명도 없다"라고 한 바 있다.

북한이 국군포로 억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이라는 제네바협약 제4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교전자는 포로자격이 없으므로 전쟁범죄자가 된다. 따라서 "북한에 억류중인 미귀환포로가 포로가 아니라 전쟁범죄자라고 하여 제네바협약 제118조의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 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영구히 또는 군사작전 기간에 그 자신의 군사적의무를 일방적·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적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외국의 영역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는 포로가 아니라 귀순자"라고 하여(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민군에 편입되었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잔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한편 제네바협약에 규정에 근거하여 북측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국군포로가 피석방자라는 것이다. 즉 협약 제21조의 "포로는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의 법률의 의하여 허용되는 한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불완전 또

는 완전 석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그들의 건강상태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경우에 취하여져야 한다. 포로는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자유를 수락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완전석방은 억류국의 수중을 떠나는 것이지만, 불완전 석방은 억류국의 영토내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것으로 포로의 신분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귀환포로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1956년이후 공민증을 발급 받아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국군포로중에는 북한체제에 저항하는 비전향 장기수가 없다는 여론분열을 조장하는 표현을 쓸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이 모두 가입해 있는 제네바협약 제5조 포로의 신분을 "적의 권력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최종적인 석방과 송환 때까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포로는 아직 포로의 신분이 유효하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한국전쟁 중 북한 노동당 경남지구 조직책으로 남파된 후,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이인모를 1993년 3월 19일,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북한에 되돌려 보낸 바가 있다. 이인모는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범죄자로서 전쟁포로의 자격도 상실한 자 이었다.

Ⅶ. 국군포로 관련법의 주요내용

1. 현행 관련법

포로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분, 연금, 각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하지만 현행 관련법에 국군포로는 적용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사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된 내용의 법이 없으므로 지원수준은 낮은 실정이었다. 현행 관련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 인사법

(1). 제적(군인사법 제40조)

군인사법 제40조에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이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軍籍에서 제적된다.(제1항)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제2항)

그러나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제3항, 시행령 제73조 3항)

(2).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동 법 시행규칙 제70조)

포로의 정의를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로, 행방불명자를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 그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와,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행방불명자의 휴직(동 법 시행규칙 제72조)

"행방불명된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휴직된다. 다만 전투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4). 행방불명자의 처리(동 법 시행규칙 제73조)

"전투중 행방불명자는 당해 전투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하며, 전사확인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사처리 할 수 있다."

(5). 포로의 처리(동 법 시행규칙 제74조)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자중 억류기간중 적군·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는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6). 포로등의 신분변동(동 법 시행규칙 제75조)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사법에는 신분규정, 행불자 처리, 포로의 처리, 포로의 신분변동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40년이 지나 귀환한 포로에 대한 신분이나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2). 군인연금법(동 법 제2조, 적용범위)

이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兵에게는 동법 제31조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북한에 억류중인 포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 법률 제4조, 적용대상유공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수행중 사망한 전몰군경(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과,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신체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전상군경, 6·25참전 재일 학도의용군인을(27)" 적용대상 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환한 국군포로는 이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1997년 1월 13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따라서 50년이후 북한에 주소를 둔 자라던지, 군인의 신분여부를 불문하고, 즉 포로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귀환한 국군포로들도 동법률을 적용하였다. 이에따라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보로금지급, 교육지원 등에 있어서 국군포로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 왔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동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38조)

동 법률 제 20조(주거지원등)와 시행령 제 38조(주거지원)에는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

(2). 정착금 및 보로금지급(동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9,40조)

동 법률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1항과, 시행령 제 39조(정착금의 지급 기준)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동 법률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2항과 시행령 재40조(보로금)에는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2억5천만원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교육 등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2.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제안의 배경

조창호, 양순용, 장무환씨가 생환하자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적정한 지원을 하지못하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의 파악과 송환 대책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귀환시 억류기간중 행적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제안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국가의 안보현실을 고려, 전쟁시 발생

---

(27).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위의 법률 제4조 제8항.

가능한 포로관련 대책을 법률로 준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국가보상체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 정립 차원에서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포로 대우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이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주요 내용

(1). 국군포로의 정의(제2조)

제정법에서는 국군포로의 정의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중인 자"로 규정하였다.

(2). 국군포로대우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제3조)

포로 소재 및 현황파악, 송환대책, 포로대우에 관한 주요시책등 기본정책을 국가가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3). 등록신청 및 사실확인(제5,6조)

귀환한 국군포로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록을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4). 임용의 특례 및 특별진급(제7,8조)

병이 포로가 된 경우는 입대일 기준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로로 억류기간중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진급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5). 보수 및 연금특례(제9,10조)

병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 초임 호봉은 하사 4호봉을 부여하며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6). 정착금. 특별지원금. 주거지원(제11,12,13조)

등록된 포로중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는 억류기간중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또한 등록된 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된 포로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지원중지 및 벌칙규정(제17,18조)

대통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죄를 범하여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자등은 그 지원을 중지토록 하였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8). 정착금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4조)

정착금지급, 특별지원금, 주거지원등에 관한 규정은 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97년 12월 1일이후 귀환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 정착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Ⅷ. 국군포로 송환대책

북한측 자료의 공개, 한국전쟁 참전국인 유엔군 및 공산군측 국가들의 전쟁자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사실의 지속적 발굴, 고령으로 죽어가고 있는 포로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체험담의 조기수집·정리를 통한 자료작업화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포로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외교차원 노력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질 송환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포로송환대책이다. 이는 현재 70순이 넘는 국군포로가 수년내 사망할 것이라는 실정을 감안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신만고 끝에 생환해 온 국군포로들에 대한 우리정부가 당연히 해야하는 제도적, 법적지원일 뿐이다.

본 자료집 제Ⅵ장, 포로송환요구의 법적근거에서 제시하였던 방안이 송환대책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북한은 미귀환 포로가 전쟁범죄자, 귀순자, 피석방자로서 포로가 아니라며 송환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있다고 확인한 이상, 과거정권에서 처럼 방치할 수는 없다. 또한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해결할려고 해서도 안된다. 우리정부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진력 있게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남북관계,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각적인 송환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부터 국민들에 포로송환의 공감대형성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고, 한국전쟁이후 부터 오늘날까지 맺어진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북간에 이문제를 풀어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다. 그리고 현행 인권관련 제도와 국제법적 테두리속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군포로는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반드시 송환되어야 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송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 대책을 찾아 보았다.

(1). 국내 대책

① 한국전쟁의 포로·실종자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의 특성과 그동안의 국내사정등으로 자료축척에 실패했고, 이문제를 45년이상을 방치하여 왔기때문에 포로 및 실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94년 조창호씨에 이어 97년 양순용씨, 98년 장무환씨의 생환이 국군포로 문제를 환기시켜 준 계기가 되었고, 뒤 늦게나마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부터라도 포로·실종자업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성치해서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실종자 가족이나 관련자들과 접촉을 가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반드시 포로의 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토대로 국제사법법원(ICJ)에 제소하기 위한것 만 아니라, 민족 비극의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함이며, 이는 포로송환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② 북한내 현지실상 파악 및 검증을 해야 한다.

우리측에서 현황파악과 더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내 생존자 및 현지실상등 포로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이를 대북설득의 기초자료로 삼고 국내 및 세계여론을 조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북한에 압력을 넣을수 있을 것이다.

③ 민간단체를 통한 직접 지원 및 인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양순용, 장무환씨등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식량 및 경제사정은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또한 국군포로들은 북한내에서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감시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고령으로 일은 않고 있지만, 식량난과 비인간적 대우로 고생하고 있는 생존국군포로에게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량등의 대북지원시 그들이 45년동안 집단거주하고 있는 함경남·북도와 양강도에 집중지원하는 방안과, 국군포로들의 신분을 북한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북한 인권단체와 적십자사 등을 통해 촉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원만한 통일과 통일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한다.

④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송환을 연계시켜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북경제 지원, 자본 및 기술투자 등을 활용해서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송환을 연계시켜 인도적으로 접근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겠다.

⑤ 사망자 유해송환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유해송환의 관계규정은 제네바협약 제120조 "포로로서 사망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사망원인, 사망연월일, 장소, 사인,매장장소, 매장연월일등을 기재한 사망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이익보호국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휴전협정 제13항 'ㅂ' "휴전협정 발생후 일정기간 내에 군사인원 시체발굴 및 송환 한다"는 규정과, 현재까지도 유효한 유해인도양해 제20항 "본 양해 폐지후 군사인원의 시체발견시 쌍방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시체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관련규정은 유해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국은 외교관계도 없고, 철천지 원수라고 갖은 비방을 하는 북한과 지난 1988년부터 미군 유해송환문제를 협의하여 1993년 8월 24일 '미·북 유해문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미국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모두 211구의 미군 유해를 인도 받았고, 1996년에는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2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1구의 유해를 찾았다. 98년 4월부터 11월 6일까지 북한과 5차례의 유해공동 발굴작업을 실시하여 총 22구의 미군 유골을 발굴하여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방부에는 차관보를 책임자로하는 전쟁포로·실종자 담당처(DPMO)가 구성되어 있고, 매해 9월 16일을 '전쟁포로-실종자 추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유해조차 적지에 남겨둘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노력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받친 영웅들에게 끝까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책임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국군포로를 방치해 온 우리정부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지금은 생존포로 송환문제가 당면과제이겠지만, 앞으로 수 년만 지나면 국군포로의 유해송환이 우리의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미래문제에 대해 미리준비하고 이미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송환하는데도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⑥ 민간단체·유관기관의 활동을 유도·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서 국내 인권관련 비정부단체들(NGOs)로 하여금 분야별로 전문화·특화화하도록 유도·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군포로 문제는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민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 활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후 인도적 차원에서 국외 인권단체들에 의뢰하여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키고, 제네바 소재 유엔인권센타 등에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청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 있는 북한의 협상행태와 그들의 협상 체계성과 일관성도, 포로송환을 간절히 바라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여론앞에는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현성 있는 방안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포로송환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⑦ 국내에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우리 군에는 실질적으로 포로 및 실종자를 담당하는 기구도 없으며 국방부를 포함하는 관련부처의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몇사람을 위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과거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야 송환사업도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국방부는 1996년 7월 국군포로 및 실종자 송환대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그 활동은 미흡했고, 포로·실종자업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⑧ 관련부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전쟁이 다자국이 참전한 전쟁이라는 점과 국군포로문제가 45년이

상을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관계가 긴장과 대결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문제를 푸는데는 국방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안기부, 보훈처, 공보처 등 관련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책기구를 설립하여 철저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 및 외교적인 노력, 귀환자의 보상문제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조창호씨 귀환 직후인 1994년 11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부처별로 업무분장을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즉 각 부처의 전문가들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업무분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관련부처를 통합조정하는 기구를 두고, 94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분장한 업무대로 관련 각부처별로 국군포로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이문제를 전담케하는 방안은 차선이 될 것이다.

⑨ 국군포로송환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이는 전술한 어떠한 대책보다 시급성의 포로송환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실현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각종 언론보도나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정부차원에서 이문제를 성실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根力이 된다. 그래서 북한도 국군포로송환이 남북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임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에 의거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차츰 약화되고 협상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대북한 인도적인 차원 및 남북교류협력에 연계시켜야 하겠다.

(2). 남북 관계에 따른 대책

①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총리(정원식-연형묵)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주된 문서이고,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해 규정한 남북고위급회담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로 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포로송환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제1장 제5조의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은 한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동 합의서 제3장 제 17조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에 따라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포로들의 근황을 파악하고, 제 제18조의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지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관한 규정은 포로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간접적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 제1항에 "이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포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합의서의 실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해 동 합의서를 원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제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② 4자회담을 발전시켜 포로문제를 의제화하고 지속적으로 송환을 촉구한다.

최근 4자회담에서는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 수준에 머무러 이행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과 중국이 이행을 보장하며 국제법체제를 갖춘 '한반도 평화합의서(가칭)' 체결이 외교통상부에 의해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는 이미 기본합의서로 해결됐기 때문에 정전협

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98년 현재 3차 본회담이 열리는 동안 의제문제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4자회담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국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담이라는 점에서, 4자회담의 대상국가들은 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이라는 점에서 4자회담을 발전시켜 포로송환 문제를 의제화 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협상행위는 대단히 변칙적이고, 협상전략은 대체로 논쟁, 요구사항의 천명, 위협을 기본으로 하는 대립전략에 편중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략적 편중성과 협상행태에 따라, 그간 북한은 '협상의 성공'보다 '정치선전'의 목적에서 협상과정 그 자체를 이용해 왔다.

따라서 한국이 국군포로송환 문제를 협상의제로 제시할 경우,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와 반공포로 석방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공세를 강하게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면, 이미 그들이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의제를 고집하며 협상결과를 한정지우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총력협상으로 진실조작과 왜곡도 시도할 수 있고, 다른협상의제와 포로문제를 연계시키며 협상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행속도를 조절하는데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 들 것이다.(28)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협상전략과 행태를 감안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4자회담을 연계하는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③ 남북적십자회담를 통해 남북간 협상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1993년 10월 14일 북한적십자사 이성호 명의로 한국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앞으로 비전향 장기출소자 김인서, 함세환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당시 우리정부는 이들이 전쟁포로가 아닌 전쟁범죄자임을 들어 송환에 불응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군포로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대해 북한은 수만명의 국군포로 전부가 전쟁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그들이 국군포로를 전범자라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의무는 북한측에 있는 것이다. 또 한편 이산가족문제로 보아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기구 활용방안

현행 유엔 인권보장제도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를 다룰수 있는 관련조약과 기구들은 다음 <표 12>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2> 유엔인권 보장제도

인권조약	인권 기구			인권보장제도	북한의 가입
유엔헌장	유엔총회		유엔총회	인권실태조사 및 권고	1991. 9. 17
			제3위원회		
			인권공등판무관		
			유엔인권센타		
			난민고등판무관		
			유엔난민센타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조사제도(1235호 절차) ·청원제도(1503호 절차) ·보고제도	
			정기보고서 검토소위원회		
			인권침해 상황실무단		
			특별보고관,특별대표작업단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법원(논의중)	권고,강제조치	
국제인권규약(B) 및 제1,2의정서	인권이사회(B규약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국가보고제도	1981.9.14가입 ·제1,2 의정서는 미가입 ·규약 41조는 수락거부 ·1997.8일방적 탈퇴선언
				국가고발제도	
			개인청원 심사실무단	개인청원제도	
국제인권규약(A)	경제·사회·문화적인권이사회(A규약위원회)			국가보고제도	1981.9.14
집단살해 방지조약	국제사법 법원				1989.1.31
	특별국제형사법원				

<출처> 김태천(1996).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역할과 한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2집, P.180.를 재구성한 「성곡논총, 제29집제2권」"북한억류 한국군포로의 송환 - 법리적 판단과 협상론의 한계를 넘어" 1998. P.465.를 재인용.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할려면,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유엔의 인권보장제도는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몇가지 방법만 제시했다.

①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가입 한 국제연합의 헌장에는 포로송환에 관한 개별규정은 없지만, 제35조 제1항에 " 국제연합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포로문제가 남·북한의 분쟁과 사태로 될 경우에 이를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제39·40·42조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제관계 및 외교관계의 단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군·해군또는 육군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포로 문제도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제조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냉전의 종식은 국제평화의 개념과 가치관을 변하게 했다. 이에 따라 유엔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고, 더불어 안보리의 권한도 확대되면서 자연히 안보리의 권한에 속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의 개념도 확대해석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특정국가 내에서의 극심한 인권침해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동 협약 103조에는 "회원국이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

---

(28). 김태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역할과 한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2집. 1996. P.188.

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군포로 문제의 기본성격이 인도법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권법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하는 인권기구들을 이용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②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남한은 1990년 4월 10일에, 북한은 1981년 9월 4일에 가입한 66년 12월 6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는 "합법적으로 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토 내에서 자유로이 이전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1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 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4항) 라는 주거이전의 자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제2, 4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자인 남·북한은 송환의 대상인 국군포로에게 그 국가로부터 퇴거의 자유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다.「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표 12>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국가보고제도 및 국가고발제도와 함께 개인청원제도가 있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1997년 8월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해 버렸다.

또 한편 1966년 12월 9일 조인되고 1981년 9월 14일 북한이 가입한「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항에는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라 하여 어떠한 경우도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제한 또는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군포로라는 신분만으로 적대계층으로 분류하여 북한 주민과 차별화하여 인간이하의 삶을 살도록할 수 없으며, 포로들의 권리의 제한이, 북한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므로 법률로도 그들을 제한할 수는 없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강제조치는 할 수 없지만, 순수한 인권문제 차원에서 역시 유엔총회 등을 통해서 국제여론화 할 수 있다.

포로송환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국군포로들의 나이가 70을 넘고 수년내 모두 사망할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현재 처한 인권유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우선해야 하겠다. 40년이상을 고통과 힘든 노동으로 살아온 국군포로들에게는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

그외에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나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국제사실조사위원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15인의 사실심사위원회를 통해 억류포로의 현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는 한편,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 국군포로 송환을 요청하거나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에 파악된 포로명단을 제출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안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현재까지 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에게 법적인 권리로서 포로송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오늘날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권위반국에 대한 공식적인 비난과 아울러 각종 교류를 중단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경제교류 및 원조를 중단하는 다자적 제재를 강화시켜 왔으므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결의 등은 단순히 공개나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내 포로들의 문제는 인도주의법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국군포로들을 송환되거나, 아니면 북한내 국군포로들이 처한

인권유린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내·외 민간인 단체들로 하여금 유엔 인권위원회등 국제인권기관에 청원과 제소를 활발히 하도록 유도,지원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유엔총회나 유엔안보리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Ⅸ. 맺음말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피해는 막대했다. 양측은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와 20만명이 넘는 포로, 1천만명의 이산가족, 많은 장비와 물자의 손실을 양산했다. 그리고 민족분단의 비극과,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적 대립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후과중 이산가족 문제와 전쟁포로문제는 가슴아픈 민족의 슬픔이다. 특히 전쟁포로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제네바협약과 정전협약에 따라 인도적 대우와 지체없는 송환이 이루어졌어야 할 민족적 과제였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공산군측 포로를 제네바협약에 의거 인권을 보장하고 성실히 보고를 했지만, 공산군측은 단 두차례에 걸쳐 억류포로의 수를 발표하고는 전쟁이 끝날 때 까지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이념투쟁 및 전쟁수행, 전후복구사업등 전시인력의 수단으로 보고 10만명이 넘는 포로중 8,333명만을 송환한 채, 나머지 포로 전부를 억류해 버렸다.

반면에 당시 유엔군 및 한국정부는 인민군으로 활동하던 포로는 모두 송환하고 석방했다. 현재 북한이 석방하라고 정치선전 공세를 펴는 사람들은 당시 빨치산 게릴라 활동하던 비전향 장기수 몇 명이 이들이다. 이들은 전쟁포로가 아니고 이인모와 같은 전쟁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쟁포로문제는 우리민족내의 역사적문제의 하나로 발전했을 뿐만아니라, 북한당국의 반인도적, 반민족적 행위는 언젠가는 명백하게 해명되어야 할 민족의 중대한 사항이 되었다.

귀순자와 탈북자 그리고 최근 생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북한에서도 가장 하위신분인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45년동안 갖은 고생과, 배고픔, 비인간적 대우속에 차마 죽지 못해 살아 왔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는 고통속에서 다수의 포로가 생존해 있다고 했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나이는 대강 65~75세정도 이다. 통계청에서 1997년에 발행한 "국제통계 연감"에는 1996~2000년 사이에 북한주민 남자의 평균수명을 68.7세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료에 의하면 휴전당

시에 나이가 24세인 사람이 절반정도 살아있다는 계산이 된다. 즉 수년내에 대부분의 국군포로는 사망한다는 것이다.

우리정부와 국민은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정부가 또다시 이들을 방치한다면 비인도적일 뿐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마땅히 이들의 북한내 인권개선과 송환을 위해 북한을 대상으로 압력과 설득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은 최후의 국군포로 한사람에게라도 이념을 빙자해서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과 생의 가치를 유린하거나 무시할 권리는 없다.

그동안 북한은 대남협상에서 협상의 성공보다는 정치선전의 목적에서 협상을 이용해 왔으며 대단히 변칙적이었다. 이에 우리정부가 당혹해 한적도 있었다. 하지만 국군포로문제는 인도적문제이므로 남북협상에 있어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국제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 식량, 에너지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기위해서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은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츰 개방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한국의 사정이 북한주민들에게 까지 전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그들을 농담의 대상으로 비하시키기도 한다는 양순용씨의 증언도 있었다.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던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이 진행중에 있다.

최근 이런 북한사정을 감안하면, 우리정부의 확고한 송환의지와 민간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적극활용하여 범국민적인 송환대책을 마련한다면 국군포로 송환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여겨진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의 시신이라도 적지에 남겨 둘 수 없다는 미국인들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부록 1>

포로 사건 및 관련 일지

- 1950. 7월. 7일 : 전쟁이 발발한 지 13일이 되던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적 포로에 인도적" 대우를 하라고 명령.
- 1950년 7월 12일 : 맥아더사령부가 미군 포로를 살해하고 있다는 성명에 대해 인민군 총사령부는 날조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인민군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취급해 줄 것을 요구.
- 1950년 8월 14일 : 주 유엔 미국대표, 유엔사무총장에 포로 및 억류자 취급방법 조사차 적십자 대표를 북한 파견 요청함.
- 1950년 11월 1일 : 북한은 국군 및 미군을 3,280명을 살상, 포로, 기재등 노획을 발표. 이는 포로에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최초로 언급.
- 1950년 12월 30일 : 평양방송, 국군포로가 6만 5천명에 달한다고 발표.
- 1951년 6월 23일 : 소련 유엔대표 Jacob A. Malik, 유엔측에 정전회담 제의.
- 1951년 7월 10일 : 휴전협상회담 시작(개성)
- 1951년 7월 26일 : 휴전협상 제10차회담에서 의제문제가 합의되는데 주요의제 중 전쟁포로 교환을 위한 준비상황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포로교환에 대한 양측의 공식적인 첫 합의사항.
- 1951년 11월 14일 : 미 제8군사, 공산군은 5,709명의 유엔군포로를 학살했다고 발표.
- 1951년 11월 19일 : 북한, 포로 문제에 대하여 유엔에 서한을 보냄.
- 1951년 11월 20일 : 유엔군, 공산군의 포로학살사건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시체 365구를 확인 했다고 발표.
- 1951년 11월 24일 : 리지웨이, 미군포로 8천명 학살됐다고 유엔에 보고.
- 1951년 12월 10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북한군 포로 999명이 구국충성을 혈서로 서약.
- 1951년 12월 18일 : 휴전회담에서 양측이 포로명단을 교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포로송환협상을 개시, 이날 유엔군측이 발표한 억류 포로수는 총 132,474명이고 이중 북한군은 111,754명 (북출신 95,351명/남출신 16,243명), 중공군 20,720명 이라 밝힘. 여기에서 한국군 37,000명은 이미 심사에서 재분류되어 포로수에서 제외되어 포로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공산군측은 총 11,556명중 한국군 7,142명/ 미군 3,198명/ 기타 유엔군은 1216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 7,142명의 한국군 포로는 인민군에 편입에 거부하거나 장교출신과 반공군인의 숫자로 추정되고 이들은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다.

· 이에 대해 유엔군측 수석대표 리비 해군소장은 터무니 없다고 하며 유엔측은 국군포로가 8만 8천명에 달한다고 밝혔음.
- 1951년 12월 22일 : 유엔군사, 일반시민 포로 3만7천명 석바할 것을 발표.
- 1951년 12월 23일 : 공산군측 수석대표 李相朝는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측은 한국군 생존포로 5만7천8백여명을 북한의 후방군사조직에 편입시킨 사실을 시인.
- 1952년 1월 13일 :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송환원칙'을 제시한 반면, 공산군측은 '강제송환'을 주장.
- 1952년 1월 16일 : 국회, 포로석방건의안 가결
- 1952년 1월 24일 :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상병포로에 대한 즉시 교환을 제의했으나, 공산군측이 거부.
- 1952년 2월 18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사건 발생(62구역의 약 5,600 명의 포로중 송환을 원하는 포로와 불원하는 포로의 심사를 위해 유엔측 분류반이 수용소에 방문하였는데, 포로 1천-1천5백명이 쇠창, 칼, 몽둥이, 사제총으로 무장하고 습격하여 미군 수배대가 즉시 응사하여 55명의 포로가 즉사하고, 22명은 나중에 사망하였고 140여명이 부상하였다. 미군측은 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건.
- 1952년 3월 1일 :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재차 상병포로에 대한 즉시 교환을 제의했으나, 공산군측이 역시 거부.
- 1952년 4월 초 : 유엔군측은 송환될 포로의 수가 116,000명이라 통보, 132,000명의 곤산군측 포로 개별심사 결과 송환에 응하겠다는 포로의 수가 7만명에 불과
- 1952년 4월 10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 발생하여 71명 사상자 발생
- 1952년 5월 7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 76소구역에서 공산군측 포로들이 포로들의 불평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한 포로수용소 소장인 돗드 소장을 납치하여 3일간 감금(5월 11일 석방, 이사건으로 보트너 준장이 수용소장에 임명).
- 1952년 5월 16일 : 1만 7천여명의 반공포로, 강제송환 반대를 국회에 진정.
- 1952년 6월 10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 격화되어 포로 160명 사상, 미군 14명 사상.
- 1952년 8월 8일 : 국제적십자회의, 포로대우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참전국 대표의 파견을 요청한 한국대표안 채택.
- 1952년 9월 20일 : 유엔사령부, 민간인 억류자 11,000명 석방 결정을 발표하고, 10월 6일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1952년 9월 23일 : 제주도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 포로들 시위로 포로 49명 부상.
- 1952년 9월 24일 : 휴전회담, 북한측 대표는 9월 20일 북한군 포로 11,000명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유엔측대표에 항의문 제출.
- 1952년 9월 29일 : 유엔군측 "포로들의 의사를 중립국위원단이나 국제적십자사로 하여금 판정케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나 공산군측은 거부.

- 1952년 10월 5일 : 포로로 오인수용한 1만 1천여명의 민간인 석방.
- 1952년 10월 8일 : 휴전회담이 포로자유송환 문제로 무기 휴회.
- 1952년 10월 21일 : 정부는 북한군 포로 1만 1천명을 석방 결정.
- 1952년 10월 31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 사건 발생하여 포로 178명 부상.
- 1952년 11월 10일 : 유엔총회에서 소련의 비신스키 외상이 한국포로의 자유송환을 비난.
- 1952년 11월 11일 : 유엔총회에서 영국은 한국포로문제에 관한 해결책 제안
- 1952년 11월 17일 : 유엔총회 정치위에서 인도대표는 한국포로문제에 관한 타협안 제출.(11월 26일 인도 대표, 자국안의 재수정 제안/ 27일 미국등 11개국대표, 인도안 지지 발언).
- 1952년 11월 28일 : 북한 외무상은 11월 23일 소련안 지지 성명 발표.
- 1952년 12월 3일 : 유엔총회에서 포로송환문제에 대한 인도안을 54:5 로 가결되었는데 주요골자는 양측에 억류중인 포로를 중립국들로 구성된 송환위원단에 넘겨 이들이 포로를 심사하여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하자는 안 임.
- 1952년 12월 14일 : 봉암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 포로 82명 사망(이달 15일 북한은 유엔군측에 항의서 전달).
- 1953년 2월 23일 : 부산포로수용소의 반공포로들, 혈서로 석방을 탄원.
- 1953년 3월 28일 : 김일성·팽덕회, 클라크 사령관에게 상병 포로문제에 대한 회한 발송. 공산군측, 휴전회담에서 상병포로 교환에 동의(52년 4월 11일 휴전회담에서 협정 정식조인).
- 1953년 3월 30일 : 유엔군사령부는 포로 132,304명중 상병포로는 2,619명 이라고 발표.
- 1953년 3월 31일 : 김일성은 전일 30일 중공 외상의 포로문제 제의에 대해 지지성명 발표.
- 1953년 4월 13일 : 변영태 외무장관 송환불원 포로의 중립국 이송반대 성명 발표, 상병포로 인수본부 설치.
- 1953년 4월 14일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북한 출신 상병포로 송환 반대 선언.
- 1953년 4월 18일 : 유엔총회에서 포로송환에 관한 브라질안을 가결.
- 1953년 4월 20일 : 유엔군 및 공산군측, 상병포로 교환 개시로 유엔군측은 149명, 국군 471명을 인수하고, 북한군 5,194명, 중공군 1,030명을 인계 함. 이후 상병포로는 총 10회에 걸쳐 유엔군측 684명, 공산군측 6,670명을 인수,인계.
- 1953년 5월 1일 : 미 국무부는 한국전 송환불원 포로가 4만 8천명이라고 발표.
- 1953년 6월 7일 : 유엔군 및 공산군측은 비밀회의로 포로교환에 관한 세목 토의
- 1953년 6월 8일 : 유엔군 및 공산군측은 휴전회담에서 '포로송환협정' 조인. 인도의 장성급 장교가 대표가 되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을 한국에 설치하고 남한내 공산군측 포로들을 철저히 면접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임무.

송환에 관한 문제는 중립국으로 구성된 송환위원단에 이관.

- 1953년 6월 12일 : 북경방송은 중공이 체코, 폴란드, 스위스등 5개국에 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에 가입토록 초청장을 발송하였다고 보도.
- 1953년 6월 18일 : 정부는 반공, 애국포로 27,000명을 석방했다고 발표.
  - 이날 유엔군사령부는 27,000명의 반공포로가 탈주하였는 바 18일 14:40 까지 971명이 재수용 되었다고 발표.
  -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은 한국이 반공포로 석방은 유엔군사령부의 권한 침해라고 비난(이달 6월 23일 유엔 총회의장도 이대통령에게 반공포로 석방을 항의).
- 1953년 6월 19일 : 김일성, 팽덕회는 유엔군측의 포로석방과 관련 클라크 사령관에 서한 발송.
- 1953년 6월 24일 : 북한군사령부는 한국전쟁 3년간의 종합전과를 발표하고, 유엔군 사상자 및 포로 수를 989,391명(한국군 580,664명, 미군 380,773명, 기타 29,974명)이라고 발표.
  - 이에 미국무부도 한국전쟁 3년간의 실상을 발표하고, 공산군 전사상자를 134만 7천명이상이라고 발표.
- 1953년 6월 29일 :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석방포로 재수용 불능을 공산군측에 통고.
- 1953년 7월 22일 : 양측 최종 포로수를 통보.(유엔측은 한국인 69,000명, 중국인 5,000명을 합한 74,000명을 억류중이라 하였고 이에 반해 북한측은 한국인 8,186명, 미군3,313명을 합한 12,76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통보).
- 1953년 9월 6일 : 유엔군 포로 12,773명 귀환, 공산측 75,823명 포로송환.
- 1953년 9월 9일 : 군사정전위원회의시 유엔군측은 반공포로 27,000명은 송환을 불원하며,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모두 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억류포로 3,400명(미군 944명) 전원을 송환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27,000명을 강제억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군 228명, 중공군 122명을 송환해줄 것을 요구.
- 1953년 9월 10일 : 유엔군측은 송환불원 반공포로를 중립국인 인도관리군에 인도(~ 9월 23일까지 총 22,604명 인도).
- 1953년 9월 21일 : 군사정전위원회의시 공산측은 북한군 83,158명, 중공군 15,584명의 포로명단을 제출.
- 1953년 9월 22일 : 반공 북한포로 1,479명을 중립국 인도군에 이관.
- 1953년 9월 24일 : 공산군측은 송환거부 친공 유엔군포로 359명을 인도군에 인도(미군 23명, 영국 1명, 한국군 335명).
- 1953년 9월 29일 : 군사정전위원회 제 21차 본회담에서 유엔측과 공산측은 '전쟁포로송환위원회' 해산을 합의.
- 1953년 10월 15일 : 유엔군측은 송환거부 포로는 1954년 1월 22일까지 시민자격으로 환원시킨다는 서한을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에 발송.
- 1953년 10월 20일 : 김일성, 팽덕회는 북한포로에 대한 해명요구 서한을 유엔군총사령관에게 발송.
- 1953년 11월 4일 : 반공포로 전원 송환 거부
- 1953년 12월 3일 : 유엔총회에서 공산군측의 포로학살에 관한 경고 결의안 가결.
- 1953년 12월 18일 : 군정위회의에서 공산측은 9월21일 제출한 98,742명의 포로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
- 1954년 1월 13일 : 군정위에서 유엔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인도 관리부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나 공산측은 유엔측이 중립국송환위원회사업을 방해하였다고 비난.
- 1954년 1월 20일 : 인도관리군으로 부터 반공포로 인수 완료(한국인 7,582명/ 중국인 14,227명, 중국인은 다음날인 21일 자유중국으로 이송).
  - 이날 북한은 반공포로 석방을 비난하다가, 28일 북한·중공 적십자사의 명의로 347명을 인수)
- 1954년 1월 23일 : 정전위에서 유엔측은 북측포로 21,800명을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인수요청에 의해 인수하고 이날 01시 1분에 석방했다고 하자 공산측은 유엔측이 중립국송환위원회로 부터 강제로 이들을 인수하여 석방했다고 비난.
- 1954년 8월 17일 : 정전위 제47차회의에서 유엔측은 2,840명의 확실한 아측 포로에 대해 공산측의 해명을 요구하자 공산측은 여전히 98,742명의 북측포로에 대해 해명을 요구.
- 1959년 11월 26일 : 정전위 제67차 회의에서 유엔측은 2,720명의 아측포로에 대해 자세한 해명을 요구, 공산측은 27,000명의 강제억류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
- 1964년 12월 14일 : 정전위원회 제119차회의에서 유엔측은 전쟁포로 및 피난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요구. 제119차 회의를 끝으로 정전위원회 회의는 종료됨.
- 1954년 9월 1일 : 한국전쟁중 전사자 시체 교환 개시.(~10월 11일까지 유엔군 4,023구/ 공산군 13,528구)
- 1956년 5월 31일 : 인민군 병력 8만명 축소에 관한 성명 발표.
- 1956년 9월 8일 : 월북자 군사정치학교 제1기 졸업식.
- 53년 9월 9일 ~ 1964년 12월 14일까지 : 정부는 9차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3차례 포로송환문제를 제기.

<출처>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방사연표(1945~1990), 국방군사연구소, 1994.
북한연표(1945~1961), 국토통일원.
기타 자료를 취합.

<부록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발효 1992. 2. 19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학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분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루.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묵

<부록3>

국군포로 양순용씨 증언녹취록

면담일시 - 1998년 11월 5일 14:30~18:30.
면담장소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양순용씨 자택.
대 담 자 - 양: 양순용씨/ 동생: 양순용씨 동생분/
김: 김복동의원실 김성수 비서관.

- 김: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로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동생: 이제 겨우 조창호씨 오고.....
- 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도 아닌데, 그곳은 중동하고 전쟁하면서 포로가 되거나, 돌아온 사람들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분들이 평생 위험에서 벗어 났으니, 평생 편하게 모시고 이러거든요?
- 김 : 어르신께서는 정확하게 몇 년생이십니까?
- 양 : 1927년 2월 20일생입니다.
- 김 : 음력이시죠.
- 양 : 양력입니다.
- 김 : 본적은 어디십니까, 원래 여기십니까?
- 양 : 여기입니다. 이동네 이집입니다.
- 김 : 입대하시전에는 무슨일을 하셨습니까, 농사지셨습니까?
- 양 : 예, 농사지었습니다.
- 김 : 결혼은 언제하셨습니까?
- 양 : 결혼은 임오년, 내가 열일곱살이니까?
- 김 : 열일곱살에 결혼을 하셨고, 군입대는 몇 년에 하셨습니까? 입대는 53년 1월에...
- 동생 : 열입곱살에 결혼하고, 열아홉살에 징용갔어요.
- 김: 징용가셨다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 양 : 해방되고 왔습니다.
- 김 : 53년 1월달에 입대하셨고요, 입대하셔서 7월 11일날 육군 8사단 12연대 수색중대에 배치되셨습니까? 그리고 53년 7월 13일날 처음 전투에 나가신 겁니까? 강원도 회양군 금성지구 전투 맞습니까, 그때 전투상황이 중공군하고 대치상태이고, 인민군은 없었습니까? 그때 전투상황이 어떠했는지요?
- 양 : 전투상황이라는게... 그날 우리가 고지에 올라가보니 사람이 세사람밖에 없었어, 부상 당해서 내려가고 전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충해 갔는데, 우리는 처음 올라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10일날 올라와 가지고 13일날 저녁에 첫 전투를 했는데 우리가 8사단 수색중대에 배치가 되어서 그날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13일날 저녁에 전투가 일어나리라 생각도 못하고 그때까지 며칠동안 전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편안히 호에 있다가 보초섰다가 또 교대로 호에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 8시, 내가 전초근무를 나갔습니다. 전초에, 그래 분대장이 그러더구만, 오늘 근무를 서야되는데 정확히 서라고, 그때는 무전기도 없었어요,

우리가 있던 후방 호에서 조금 봉우리를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주지관소입니다.
쭉 교통호를 팠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파고 20미터 간격, 그다음 30미터 간격으로 호를 파고, 적진을 향해서 총구멍을 내놓고.... 그때 우리 있는 곳은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나는 전초근무이기 때문에 교통호를 넘어서, 바로 내려갔죠,
분대장하고 나하고 함께 산 능성을 타고 내려갔는데 주지왕선 교통호에서 한 100미터 내려가니까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중공군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래 거기서 100미터 뒵디다.
중공군이 있는 고지가, 바로 보여요, 그때 8시간 반에 도착는데, 철저하게 적을 감시하고 동태를 살필려고 송수화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대장이 즉각 보고하라는 거예요.
분대장은 가고 나혼자 배치됐지 능선에서 ... 아군진지의 교통호에는 세명씩 호에 있더란 말이예요. 거기서 와서 보초 딱서서 앉아 있는데, 저쪽 중공군 봉우리에서 신호탄이 아군진지로 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야 여기 있다가는 안되겠다, 은폐할 호라도 파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무장하고 갔기 때문에 대검을 빼서 내가 들어갈만한 호를 팠습니다. 거기에,
호를 파는데 자갈밭이고 힘들지 뭐, 그래도 살자니까 어디로 이동도 못하는거고, 처음이지 이동했다가는 큰일나겠지, 그래서 호를 한시간정도 팠어요,
철모에다 흙을 담아서 많이 내고, 그래 1미터 20정도 팠어요 호를 개인호를...
포탄이 계속 날아 오더란 말입니다 포탄이, 그러니까 아군에서 막 포가 넘어오는데 보니까 내가 중간에 들어갔더라구, 그래서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이 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정면만 바라보고 아군들이 총구만 내놓고 있는데,
적이 어떻게 여기 올 것인가 안올것인가, 그것만 감시한단 말이야, 10시됐는데 윤곽적으로 보이는데, 열시되니까 어둡습디다. 여름이라도 중공군 비옷은 넓떡하니 네모난 그거라, 그것쓰고 따발이 총 들고 얼마나 오는지 까맣게 들어오는데, 그래 수화기들고 전화하니까 다 끊겼지 뭐 호에 아무도 없어 아무리 해도 안되지, 그래서 할 수 없었지,
한 20미터도 안될거야, 내가 서면 중공군에게 보일까봐 막 기어올라와서 교통호까지 왔어, 와서 보니 소대장이 거기 있습디다.
이야기 했지뭐, 그래서 소대장이 전투배치 하더구만, 그때는 호마다 수류탄을 마대로 같다가 채워놨거든 분배해서 교통호에다가 넣고 막 던지지 뭐, 나는 알고 올라왔지만 다른 아군들은 중공군이 올라오는지 모르지, 중공군이 어디만큼 올라온다는걸,
그래서 막 던졌지 다 던졌지 수류탄을, 용감하더만 다들 '야' 소리지르면서 던지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무척왔어, 교통호에 물이차서 허리까지 오더라고, 그렇게 하고나니까 너덧시 되니까 날이 밝아 오더라구 여름이니까.
날이 훤하게 밝는데 내 전면에 오던 중공군이 오지 못했어. 올라오면 우리 교통호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지 못했어, 야 중공군들이 못왔구나, 후퇴해 내려갔구나, 수류탄을 너무 던져 못 올라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넘어다 보니까 올라오다 전멸이 됐지 모두다.
내 15미터 앞에서 기어올라오다 죽었어, 너무때려서 따발총이라는게 개머리판이 망가졌더라구,
중공군이 남긴 신발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중공군 컷대기라든가 발이라든가 그런거 가지고 오면 휴가준다 그런 말이 또 떠돌았어요, 그것을 줍겠다고 줍는데, 내가 있던 교통호 뒤로 중공군이 확 덮친거라, 중공군한테 확 덮인거야, 우리 8사단이 여기 있으면 6사단은 저쪽으로 있는데 6사단이 터져 버린거야.

* 김 : 6사단 방어진지가 무너졌군요,
* 양 : 무너졌지, 그러니까 우리 있는곳은 너무 쎄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6사단이 터졌으니까 그리 기어 올라왔지 그래 덮쳤지 우린 완전히 포위된거라, 역포위됐지 우리 앞으로 온게 아니라 돌아 가지고 우리를 포위한거야

• 동생 : 후퇴명령도 안내려 졌잖아...
• 양 : 후퇴명령이 뭐야 후퇴명령도 내리지도 못해...
• 김 : 역포위되서 교전이 이루어 졌습니까?
• 양 : 아니 가버렸지, 내옆에 있던 사람이 경용이라고 친척 동생뻘 되는데 나하고 교대했거든, 그사람은 후방 봉우리있는 호에 있고 나는 전방초소에 내려갔단 말이요, 전초에, 나는 그사람이 죽은줄 알았지 거기까지 포위됐거든 죽은줄 알았더니만 여기와서 보니까 살았어, 후퇴해서 왔더라구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개미떼처럼 산을 덮어버렸으니까?

• 김 : 둘러 쌌으니 투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양 : 그럼 둘러싸서 꼼짝 못했지
• 김 : 투항하셨습니까 몇 분이 같이 계셨죠?
• 양 : 없었어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수류탄같이 던지던 사람들은 다 죽은거라
• 동생 : 소대내에서 형님 혼자 살았네
• 양 : 그럼 나혼자 살았지, 30미터 붙잡혀 가니까 거기에한 열댓명있고, 또 조금 내려가니까 아홉명있고, 산에서 포로된게 30명 정도
정전협정이 7월 27일 됐는데,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휴전선을 정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공군들이 우리 화천댐까지 뺏자고 총 공격을 했다는 거지, 그런줄 몰랐단 말이야, 할 수 없이 그전투에 30명이 포로됐어요. 포로가 되어 끌려서 내려가서 중공군 임시 포로수용소가 휘양에 있더라구,

• 김 : 포로된 시간은 언제쯤 됐습니까 중공군한테 ?
• 양 : 포로된 시간은 10시 됐습니다. 아침 열시
• 김 : 그때 실신하시거나, 다치신곳은 없으셨죠?
• 양 : 다친곳은 없고 그때 다쳤다는게 포탄에, 포탄에 맞아서 모래랑 이런데 둘러쌓여서 그것좀 있고, 다른데 맞은건 하나도 없었어요.
• 김 : 8사단으로 가신날이 53년 7월 10일입니까? 11일입니까?
• 양 : 8사단으로 간 것이, 우리가 배치받기는 춘천에서 배치 받았거든 춘천에서 배치받았는데 6월 25일쯤 되겠습니다. 53년 춘천에서 배치 받아서 고지로 올라오는데 중간에 연대에서 며칠 있었어요, 며칠있다가 고지로 올라왔죠.

• 김 : 수색중대에 배치 받은게 7월 11일입니까, 10일입니까,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7월 13일날 전투하지 않으셨습니까?
• 양 : 7월 13일날 전투하고 올라오기는 7월 10일인가 딱 사흘있다가 그랬으니까
• 김 : 춘천에서 군사교육 받은게 있습니까?
• 양 : 군사교육은 제식훈련 , 그기간에 춘천에 좀 머물렀지
• 김 : 춘천에서 제식훈련시키던 훈련소 이름은 생각나십니까?
• 양 : 춘천보충대라고 하더만,

• 양 : 회양 임시포로소입니다. 그래 거기서 붙잡혀 들어가서 거기서일 죽도록 일시키더구만,
• 김 : 회양이 어디입니까?
• 양 : 회양이 강원도
• 김 : 옛날 강원도
• 양 : 옛날 강원도 회양군 지금은 이북이지
• 김 : 중공군 임시포로수용소에 가셨군요, 7월 13일날 회양수용소로 가셔서 53년 9월 30일에 국군포로 600명하고 강동군으로 가셨습니까?

53년 중공군 회양군 임시포로수용소에서 9월달 강동군 르포수용소로 가실때까지 두달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되시고부터 9월 30일날 평경남도 강동군 포로수용소로 가셨으니까 그 사이에 두달 공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 양 : 그때는 임시로포수용소 일했죠.
• 김 : 주로 어떤일을 시켰습니까?
• 양 : 토굴집 짓는거 땅을 파가지고 중공군 집을 지었지, 군대들이 있을 집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 그런일을 했어요 감시는 철저하고,
• 김 : 식사는 어떻습니까?
• 양 : 중공군 먹는게 많다는 거지, 먹는건 마음껏 먹어라 자꾸 그러면서, 일은 공간없이 감시속에서 계속했지 꼼짝 못하지 뭐, 그리고 통역관이 와서 정전됐다고 이야기 해줍디다.

• 김 : 통역관은 어느나라 국적입니까 ?
• 양 : 중공군이지, 중공군인데 조선족인 것 같아요.
• 김 : 조선족이 와서
• 양 : 정전됐다고
• 김 : 그것이 8월경입니까?
• 양 : 정전됐다는게.....
• 김 : 통보받은게
• 양 : 7월, 8월초가 될겁니다.

• 김 : 강동군 포로수용소에 가서 계셨다는데 포로수용소하고 교화소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양 : 포로수용소라는 것은 전쟁하다가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거, 전쟁마당에서 그런 포로수용소를 따로 해놓고, 교화소라는 것은 일반범죄자들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 일반범죄인들 감금하는 그런 집이죠.
• 김 : 수용소는 포로들만, 정치범수용소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군요.
• 양 : 정치범수용소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 그것은 따로 골짜기에다 몰아넣지
• 김 : 9월 30일경 가셔서 9월 30일부터 53년부터 56년까지..

• 양 : 56년 6월 23일쯤 될겁니다. 그때 가들이 뭘했는가 하면, 인민군 8만명을 제대시켰지,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김일성이...
• 김 : 정전도 됐고하니까 인민군이 많다고 제대시킨 건가요.
• 양 : 왜그런가, 우리(포로)가 순전히 자기네 사람이 됐다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제네바 협정에의해서 포로는 교환된다는걸 알고 있었단 말이지, 항상 한가닥 생각밖에 없지 교환은 꼭 될 것이다. 그리고 제네바협정에 의해서 포로는 꼭 교환된다,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야, 우리는 꼭 믿고 있었지 있었는데, 하루는 중공군들이 일을 안데리고 나가고 모이라는거야 그래서 모이니까, 조금 내려가면 운동장같이 해놓은 마당이 있는데 거기 모이라고 해서, 앉혀놓고 통역관이 연설을 하더만, 정전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거 그렇게 이야기 해줍디다. 그래 우리는 이제는 됐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사나흘 있으니까, 트럭 자동차를 놓고 담배열갑한보루하고 수건 하나씩 줘, 그래 이제 보내는 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타라고 해 탔는데 계속북쪽으로 올라가...,
그래 보니까 철령이라, 거기서 내가 지도를 자꾸보니까 아는데 철령이면 고산이고 그다음이 원산이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거든 철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왜 이 철령을 넘어가는가 회양이면 판문점으로 가자면 서쪽으로해서 가야되는데 왜이리 가는가 그래 의심을 가졌지뭐, 거기서 간사람들이 서른명이거든 딱 30명인데 우리말하는걸 중국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까, 이게 판문점으로 가는데 아니다 중국으로 실고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하룻낮을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그 집이 창고같은게 하나있고 학교처럼 불이 있느데다 그 위에 도랑이 있더만 영어로 포로라고 써 있더라구만,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훈련소에 있을 때 중공군 포로수용소 꼭대기에 그렇게 영어로 썼더라고,
그래서 이게 포로수용소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내려서 보니까 인민군이 왔더라구, 그때는 인민군 장교들이 군관들이 와서 하나씩 인계하더라구 명단을 보고, 하나 나가서 또 서고 하나 나가서 서고 인계 다하고 중공군은 차타고 가버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인민군한테 소속됐지, 그래 가지고 계속 감시속이지뭐, 그때부터 배를 골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지 아무것도 먹을것이 없으니까

• 양 : 그래가지고 며칠있다가 집합하란 말이야, 거기서 한 열흘 못있었는데, 집합시키더라구.
무슨일이 있겠다 집에 가는 모양이다, 귀환은 꼭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지.
그전에 우리 30명하고 또 다른데서 황해도 곡산, 철원에서 포로들이 막실어들이지 포로수용소로, 한 600명정도 되었지 거기에서 600명이 모였지, 그래서 분대, 소대 다 편성해서...
• 김 : 포로들을 분대, 소대 편성했습니까 인민군이?
• 양 : 인민군이 전투편성했어요, 소대장, 군관장교가 하나 일소대장, 이소대장하고 그다음 선임하사 그렇게 맡아요. 소대별로 그사람들로 하여금 관할하게, 한 열흘 있으니까 집합해서 다모이니까 기차역에 나간다 이거지. 거기서 성호리역이 한 5리정도 됩니다.
성호리역에 나갔는데 화차를 되놨습디다, 미닫이 열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문닫으니까 그만이라, 아무것도 못하지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거야, 밖에도 보이지 않고, 그저 공기통 내놓은거 그것밖에 없지, 야! 이상하다 왜 이런데 태웠는가? 판문점으로 가자고 이러는가하는 의심이 났어.
그때 까지도꼭 교환되는줄 생각했지. 중공군 통역관이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때도 교환된다는거 알고 있었지, 그랬는데 계속가는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일주일을 갔어요. 일주일 기차를타고. 식사는 가들이(인민군) 전화를 해놓으면 식사때되면 문열어 놓고 밥통들여주고 닫으면 다니까, 그리고 조그만 역같은데서 소변 볼사람은 소변봐라, 내려가지고 또 보초서고 소변보고, 마지막 일주일 오니까 내리라고해 내리니까 함경북도 경흥군 오봉 그렇게 썼더라구 그러니까 철도 끝이지.

• 김 :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양 : 경흥군 지금은 지역 명칭을 은덕군으로 고쳤는데 그때는 경흥군이야
• 김 : 아오지 탄광쪽으로 가셨군요
• 양 : 거기가 아오지 탄광이지, 53년 9월초 이튿날인지 말일경이야.
야! 그때 우리가 아오지 탄광에 대해 좀 알았거든, 아오지 탄광이면 범죄자들이나 가고, 죽을 곳인 줄 안단말이야, 이제는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끌고가는데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지은사택인데, 기와집으로 한 열동씩 열집씩 열집씩해서 살림살게 그렇게 해놨더구만, 그런데 그걸 개조해서 문들 달았는데 밥주는 구멍만 내놨어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형무소구나 그런 생각이나더라구 우리 여기에다 가둬놓고 철저하게 하기는 하겠다, 죽이거나 무슨수가 있겠다 그런생각만했지.
거기에서 며칠후에는, 포로가 아니라는거지. 이제는 너희는 포로가 아니고 동족이기 때문에 해방전사다 해방전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일체 군대식으로 다한다는 거야 군대식으로

• 김 : 중공군 수용소에서 강동군수용소로 가신게 언제입니까?
• 양 : 그때가 8월 한 10일쯤 될겁니다.
• 김 : 강동군 수용소 가신게 8월 10일날쯤 가셔 가지고 아오지로 가신게

• 양 : 아오지로 간게 아오지에 도착하니까
• 김 : 9월말입니까?
• 양 : 9월 ,25일날인가 그렇게 됐지? 그날가서 내리니까 서리가 새파랗게 왔더라구요
• 김 : 탄광생활을 계속하신겁니까
• 양 : 예 계속 지금훈련시키는거야, 제식훈련을 자기네들 훈련시키고 또 학습시키고 정치학습을 시킨단말에요 매일정치학습을 시키지 뭐.
• 김 ; 노동은?
• 양 : 한 며칠은 일 안했지 정치학습 시키고 그다음 탄광사람들이 왔더라구요, 탄광이 옛날에는 위험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고 학습시켜야 우리 귀에는 들리지도 않지, 오직 고향갈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 가만이 앉아 있다 오고, 그랬는데 보름이 있었을까 탄광일 하는거 그걸 짜더라구 3교대로 너는 일교대 너는 이교대 너는 삼교대 그래 가지고 일교대는 아침 낮일, 낮일 할사람들은 데리고 가기는 보초가 데리고 가지, 완전무장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소대장이나 데리고가서 인계를 해주면 그때 부터는 사회사람들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사회사람들한테, 탄광지휘관들한테 인계해주면 탄광지휘관들이 우리를 너는 저사람 따라가시오 너는 저사람 따라가시오. 그사람이 데리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만 켜 가지고 들어가니까 죽을것 같아 죽는게 차라리 났지, 탄광이 위험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 들어가보니까 보이기를 하나 머리마다 충전기인지 헤드라이트 몇 키로나 되는거 차고 불을 켜가지고 들어가니 무너지는 소리는 나지, 깜깜하기는 하지, 막 죽을 것 같애.
그래서 일을 거기서 하는데 자기네들 자기들 따라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사람들 삽질하면 우리도 삽질하고... 탄광에 들어가는데데 한시간 걸려, 걸어들어가는데 굴 나오는데 한시간 걸리고 안에 들어가서 여덟시간 일하고, 그래서 벌서 열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서 대소변보고 개인적인 시간은 없고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한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이 여러군데이니까 네사람씩 갈라 들어가는데, 그사람들 다 모여서 사람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자니까 그 추운데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여기있다가 거기 가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애. 뭐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와서 조밥 퍼주면 훅불면 날아가는거, 그거하고 무우시래기국 주는데... 죽겠지뭐. 배가 고파서. 그래도 할수 없지 그래도 거기서 포로교환되는가 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하니 어떻게 하겠어,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이듬해 54년도에 그만 깔린거라 무너져서, 그래 머리 타박받고 눈에 뭐가 들어가고 했어, 눈하나 실명됐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안과의사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게 다시 이안한거니다. 그래서 죽자고 그랬어요, 자살이라는게 힘들어요

• 김 : 탄광에서 실명하셨습니까, 작업하시다가
• 양 : 예
• 김 : 지금은 수술하셔서 보입니까
• 양 : 안보이지 전혀 못보지, 정말 울음으로 세월을 다보냈지, 그랬는데 포로생활 3년되니까 53년에 7월 14일날 포로되서 56년 6월 23일날 김일성이 인민군 8만명을 제대시켜라해서 전부 석방됐지. 왜 석방시켰는가. 첫째, 우리를 전략품으로 해서 탄광에 넣어서 탄을 파야 자기네들 복구가 되니까, 우리(한국)처럼 원유가 있으면 아무일이 없을텐데, 거기는 탄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탄으로 전부다 하니까, 모든걸,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노인밖에 없어요, 병신하고 다 인민군대 보냈기 때문에 몽땅 동원돼서, 남한에서 차단하는 바람에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지.
그러니 그 탄광에 써먹자고 누가 탄광에 가나 안가지, 가들 말로 죄인이니까 탄광에 들어가서 고생했지 그리고 또하는 뭔가 여자들이 꽉찼어, 과부들이. 인민군대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못했으니까. 몽땅 여자라 시집도 못가지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들 어떻게 해결

할꺼야, 또 세 번째는 후세. 짝을 지어놔야 자기네 복구하고 전쟁준비 해야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몽땅 제대시켜 가지고 가지 못하게 거기서 살게 만든거라, 어디를 못간단 말이야,

• 김 : 공민증 발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양 : 예 공민증 발급으로 사회인으로 되지만 멀리는 못간단 말이야 郡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 김 : 공민증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있을수 없죠.
• 양 : 있을수 없지, 남해안에서 간 사람들 일본시대때 돈벌이나 보급대 징용 이런데 끌려가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에서 왔다니까 정말 반가워하지 그사람들도, 살림을 해야되네, 이제는 못가네, 자꾸 그러지, 여기서 죽네 살아서 고향에 가야될거 아닌가.
• 김 : 전쟁직후에 휴전한 다음에 대부분 탄광이나 채광작업에 동원되셨나요,
전쟁난 다음에 복구공사에 동원된적은 있습니까?
• 양 : 다 동원됐지 복구에...
• 김 : 어떤 복구를, 주로 어떤일을
• 양 :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탄광을 운영 못하니까 무너졌어요 굴이, 그걸복구하지 않으면 탄이 못나오니까,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갔지, 말이 여덟시간 노동이죠, 法을 가면으로 내놓고 수령님의 교시가 법이라는거야, 수령이고 교시가 법이기 때문에 수령님이 심리하는 석탄을 우리가 캐지못하면 살 권리가 없다 꼭 해야된다하며 자꾸 일을 시키는데, 안하면 교시집행에 반대하는 자로 몰아 할수없지, 너는 오늘 들어가서 얼마의 탄을 캐라 계획을 주거든, 계획을 못하면 다해야 나오는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대해서 들어오면 자기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일하던 곳을 교대에게 넘겨주고 다른곳에 가서 계속 탄을 캐야되,

• 김 : 제가 듣기에는 아오지탄광 포로들은 '다' 로 시작하는 개인번호가 있다던데....
• 양 : 번호는 하지않고 포로 위주니까, 600명 되니까?
• 김 : 표시나 수용번호는 없었습니까?
• 양 : 표시는 없고 포로라는 말도 하지않고 해방전사라고 부르고, 내무성건설대라고 하지.
• 김 : 탄광에서 일하면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 양 : 보수는 주는데, 살림을 하니까 줘야 그걸 먹고 내일 일나가지, 안주면 끊어버리면 일못한단 말야 안주면....
• 김 : 음식말고 돈으로
• 양 : 돈주지 그것 가지고 사먹고 또 배급제도니까 그곳은
• 김 : 돈은 얼마쯤 받았습니까?
• 양 : 많은게 삼천원 그것가지고 옷사입고 가족들 생활하고

• 김 : 포로수용소나 탄광에 이북출신들도 일부 있었다면서요
• 양 : 북한 출신도 있었지, 북한 출신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직원이고, 그 다음에는 공비, 한국에서 포로된 귀환된 사람들 탄광에 집어넣었지, 너는 한국에가서 포로되서 넘어왔기 때문에 정신이 변경됐다. 정신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에 전파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탄광에 들어가면 꼼짝을 못하거든, 굴안에 들어가면 징역사는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다음에는 전쟁전에는 개성이 삼팔 이남이었거든, 전쟁이 끝나면서 휴전선이 갈려서 이북이 되서, 그사람들도 그전에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온사상을 가졌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부류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돈을 떼먹고 범죄를 저지른 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 넣은거야,

• 김 : 징용다녀오셔서 국군에 자원입대하셨습니까.

• 양 : 그때는 전쟁이니까, 징병이 있었고, 징병은 스물한살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는거고, 그 다음은 소집영장으로 그위에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서른살까 갔지.
• 김 : 당시는 전시니까 21세 이상은 소집영장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입대해야되는 것이고 자원입대는 21세 이하만 가능했군요?
• 양 : 21세되기 전에는 학생이라 학도병은 가능하고,
병역법으로 동원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군대에 가고 내가 조금 늦게 군대에 갔거든 동생은 나하고 같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전사통지서가 온게 내가 14일이고 동생은 16일날인가 그럴 겁니다.
• 김 : 전사통지서가 53년도 왔습니까?
• 양 : 그렇지 정전되고 나서
• 김 : 탄광에서 장티푸스나 콜레나 폐병환자들이 많았다는데.
• 양 : 우리가 석방될 때 병이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때 우리 국군 군대뿐아니라 노무자가 있었거든, 한 40살 되는 사람들은 전략물자도 운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병이 있고 나약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한 70명정도 농촌으로 보냈습니다. 탄광에서 쓸모없는 사람들.

• 김 : 다리도 다치셨죠 언제 다치셨습니까?
• 양 : 63년도 입니다.
• 김 : 63년도 어디에 근무하실 때 입니까?
• 양 : 아오지 탄광입니다.
• 김 : 이런것도 다 보관하고 계시네요?
• 양동생 : 이게 다 편지온겁지다. 훈장까지.....
• 김 : 단기 4286년 7월 15일부로 명예전사하였음을 통지함.
단기 4286년 7월 20일 육군 제5788부대 부대장 육군대령 조재민... 주소는 지금하고 같네요.

• 김 : 북한내 생활을 말씀해주시지요, 생활정도가 어느정도인지?
• 양 : 생활정도라는게 그곳은 없는 곳이니까? 그저 배급타먹고 주는거 타먹고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제일 억울한 것은 신분관계 포로딱지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아무데도 참가하지 못하고 인간이하, 그전으로 말하면 백정 신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억울한거지요, 우리대에는 이제는 본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2세대들이 억울한 것이 학교를 못가요,
• 김 : 의무교육 아닙니까?
• 양 :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은 고등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가자면 그곳은 갈 생각도 않고 또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큰 다음에는 결혼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좋은 곳으로 결혼을 보내야겠는데, 자기 처리할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오는데가 없어 그것도 오지못하게 되어있어 포로자식들한테 가면.....
• 김 : 장가나 시집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 양 : 그럼. 처 삼촌 사촌까지 따지니까? 그런사람 결혼하면 공무원이 못되는 거라.

• 김 : 거기 계시는 분들은 결혼을 외지로 보낼려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낼려고 하고 2세들은 결혼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려고 할텐데요.
• 양 : 통제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말이야. 우리가 평양이나 함흥에 보내고 싶어도 우리가 친척이 있습니까. 나가기나 합니까. 꼼짝도 못하고 굴속에 들어갔다 집에가서 잠이나 자고 또 굴속에 가고 그게 항상 일인데,
그래서 할수 없이, 한다는게 거기에서 저쪽 개성이나 이런데서 온사람들 아니면 그런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있는 주민들도 성분이 나쁜사람들 끼리 끼리하는거지 뭐...

• 김 : 남한에서 결혼하셨다가 얼마 안되 포로가 되신분들도 계시고 결혼 안하시고 포로가 된 분도 계실껀데.., 탄광주변에 여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대부분 그분들하고 결혼을 합니까?
• 양 : 장가 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하고, 장가 안간 사람들은 처녀들도 있어요.
자기 적당한대로 옆에서 노인들이 고향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중매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사람들 말 듣지, 듣고 결혼하고 그러지.
• 김 : 잡혀가신 분들과 본래 살던 사람 합쳐서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 양 : 여자, 남자 다합쳐서 육천명이 있었습니다. 아오지 탄광에... 그리고 67년도에 아오지 탄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갈라놨습니다. 탄광 하나 더 생겼지뭐, 그래 아오지 탄광을 아오지 탄광이라 하지않고 613 탄광으로 고쳤지.
• 김 : 613탄광으로..., 몇년도라고 하셨죠
• 양 : 67년 7월에

• 김 : 몇살까지 일하셨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 양 : 육십세까지 제한이 있어요. 육십이 넘으면 쓸모가 없거든. 놔둬봐야 밑천만 들어가니까 육십되면 일 안시키지 자기 능력못하니까, 육십세 넘으면 굴안에 들어가 일 못해요.
• 김 : 포로로 잡혀 가셔서, 남한에 계실때 제네바협정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포로로 역류된 기간중에 희망도 가지고 계시다가 좌절도 하시다가, 이제는 못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생각도 많았겠습니다.
• 양 : 우리 정치학습하는거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못간다 통일이 돼야 간다, 이생각밖에 없고 통일을 기다렸지, 그때 1974년 남북공동성명 발표할대 그때는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포로들이...
• 김 : 53년도 휴전되고 난 다음 언제쯤 이제는 못가는구나 생각하셨죠.
• 양 : 일년까지, 일년이 지나니까 안되겠습니다. 그사람들 말하는게 벌써, 그리고 그사람들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일을 뼈가 빠지게 시키고, 시간을 연장하면서 하고 하루 두시간씩 꼭 학습을 해야돼, 김일성우상화. 김일성이 만주와 싸울때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찾았다. 그래 우리는 생각하는게 우리세대들은 김일성이 절대 그럴수 없다는걸 알지만, 그런것을 말도 표현 못하거든, 일반주민이고 할 것 없이 모두 학습을 시키는데 빨치산에서 김일성이 몇살에 뭘하고 뭘하고 그런걸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어디가서 끊어지게 되냐하면 40년 1940년대에서 41년까지 나오고는 42년부터는 즉 계속해서 8월 15일 해방전까지 나와야 되는데 4년동안 없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다 어찌 끊어졌을까? 그리 생각을 하니까, 옳다 분명히 소련에 가 있었다. 소련가 있다가 소련군대 나오니까 그만 같이 따라나와서 여기와서 정권을 쥔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숙이도 그래요 김정숙이가 형편없이 우상화 받들거든 김정숙이를, 그래 김정일이를 백두산에서 낳았다 하면서 백두산에다가 밀령을 크게 짓고 굉장하게 해놨거든, 백두산에서 낳았다가 그다음에는 올때는 웅기로 상륙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의심가는게 백두산에서 싸우다가 해방을 맞이 했으면 백두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 조국인데, 한국인데 왜 소련으로 가서 배를 타고 웅기로 상륙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2세들은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투쟁하다 웅기로 올라 온걸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도 포로들이나 조금 아는사람들은 지어낸 희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할수없어서 좋다고 하지만...

• 김 : 강동구 포로수용소나 건물들이 생각나십니까?
• 양 : 예, 건물이 조그마한 학교였습니다.
• 김 : 철조망이 있었습니까?

• 양 : 예, 철조망을 쌓았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보초도 세우고
• 김 : 통풍이나 햇빛은 잘 들어오고 정상이었습니까?
• 양 : 학교·교실이니 언제 그런거 할 사이도 없지뭐, 아침이면 세워서 보초가 서서 나가서 도랑물에 세수시키고 들어오고
• 김 : 포로수용소에서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 양 : 포로수용소에서의 일과라는게 아침 6시면 기상이고 열시에 취침하고, 기상해서 나와서 아침 점호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식사시간이지, 딱 서서 보고하고 군대식이야. 그다음에는 식당에 가서 식사시작하면 같이 다먹고 식사 그만하면 그만 놓고 나와서 그다음 열을 서서 자기 병실로 가지.
• 김 : 병실이라 합니까?
• 양 : 병실이라고 합니다. 병실에 와서 그다음에는 정치학습을 합니다. 모아놓고 처음에 가서는 모아놓고 하는데 탄광일을 하기 때문에 무질서하지, 3교대로 들어갔다 나왔다하니 밤일하는 사람, 또 오후에 나가는 사람 아침에 나가는 사람, 그사람들은 들어와서 밥을 먹고 두시간 정치학습을 하고 잠을 잡니다. 하루에 두시간씩은 무조건 학습하고 강연하고 합니다.
• 김 : 학습을 주로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 양 : 밤일 나가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낮에 자니까
• 김 : 수용소에서도 일을 합니까?
• 양 : 예, 3교대로 해놨기 때문에 학습도 3교대에 맞게 해놨습니다.

• 김 : 계시면서 미군이나 유엔군포로들은 보신적 있습니까?
• 양 : 포로가 되서 30일날 내려가서 우리가 휴식을 하는데 미국포로 3명을 데리고 내려오더라구요. 회양 임시포로수용소 가기전에 고지에서 잡혀 내려와서 휴식하는데 미군포로 세명이.
• 김 : 전투하실 때 고지부근에 미군들은 없었습니까?
• 양 : 우리가 전투한곳에는 미군은 없었습니다. 우리 옆이나 어디에 아마 UN군이 있었던 모양인데, 젊은 사람들이더구만요. 중공군들이 독단적으로 3명을 포위해서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데리고 다른곳으로 보내더라구, 같이 안보내고.

• 김 : ,전쟁초기에는 국군으로 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중공군이나 북한군으로 또 계급장 달고 싸우다가 국군포로가 된 경우도 있었죠?
• 양 : 있어요.
• 김 : 혹시 아시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양 : 1차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오고 쫓아서 올라 갔거든 청진까지 쫓아갔는데 내려오다가 포로된 사람들이 있거든, 그사람들은 인민군에 편입되서 인민군 복장, 계급장 까지 다주고 인민군이 써먹었지, 내려오다 보니 탈주병들이 많다 이거야, 변한거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지, 공간만 있으면. 그건만 노리는데. 그래서 부대에 놔두지 않고 후방에 인민군 계급장 달아서 다리나 복구하고 그건것들을 시켰지, 그런거 시키다가 8만명 제대에 같이 들어가서 그사람들도 탄광으로 보낸거야.
• 김 : 북한에 있는 교화소, 교도소, 포로수용소 어디있는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양 : 교도소야 많죠 천진, 함흥도 있고 별군데 다 있죠..
• 김 : 수용소는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양 : 수용소라는 것은 포로수용소는 그때 8만명 제대되고 난 다음에는 포로수용소가 다 없어졌어요
• 김 : 김일성이 8만명 인민군을 제대시키기 전에 어르신 계시던곳 말고, 다른곳도 있었는지?
• 양 : 다른곳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오지로 갈 때, 내무성건설대 2201군부대, 본부가 서평양에 있어요

그다음에 아오지로 온게 17내무성건설대 1701부대, 그리고 함경북도에 열군데 탄광이 있는데 몽땅 포로가 다왔어요.

• 김 : 다 있다고 봐야겠죠?
• 양 :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사람들 말을 통해서 알고 탄광이라면 여기로 말하자면 대우면 대우, 현대면 현대가 탄광을 운영하거든, 그러니까 한 회사거든 전국의 탄광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탄광에 관한 건, 간부들도 바뀌거든 아오지 탄광간부가 삼화탄광이나 함흥탄광으로도 가고, 탄광간부들은 계속 그렇게 배치시키거든, 위에서 내려올 때 어느 탄광에는 탄이 얼마나는데 너희 탄광에는 탄이 못나나, 어느 탄광은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연장 작업을 하면서 하는데, 너희 탄광은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탄광에서 탄을 못내면 그 탄광에서 못내기 때문에 너희 탄광에서 지원해서 더 내달라 그사람들은 함경북도 탄광을 북부탄전이라고 하는데 북부탄전 계획이 나오게 되면 아무 탄광에서나 계획을 하면 자기네 일 계획한거야 그러니 거기도 건설대들이 많이 왔는데 일 잘한다고, 탄을 많이 내는데 너희 못내나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훤하게 알지요.

• 김 : 그렇게 계시다가 45년이 지난 뒤 북한에서 탈출하셨는데 어느경로를 통해 오셨습니까?
• 양 : 내가 89년도까지 일하고 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여기 나오기 2년전까지 산중에 가서 농사짓는데 회사에서 회사자체로 농사짓는 곳이 있어요 그래 거기가서 농사 짓게되면 먹는 것은 배부르게 먹고, 강냉이밥 배부르게 먹게하고 노인들이 모여서 농사짓는데 그곳은 계획도없고 부업으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 데려다 일시키고 나오는거 조금씩 주고 그러지, 거기 있다가 그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이 드니까 칠십이 넘으니까 못하겠더라구.
• 김 : 농사지으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양 : 위치가 지금은 나진 선봉시

• 김 : 97년도 10월달에 북한을 탈출하셨습니까.
• 양 : 97년도 10월달에, 내가 여기로 오게 된 동기는, 항상 고향에 대한 생각...
그런데 계속 내 머리를 못살게 한 것은 내가 딸이 여섯인데 넷을 시집을 보냈는데 성분관계로 좋은곳에 보내지를 못하는거야, 그저 탄광 굴속에서 일하는거 아니면 없거든, 좋은데도 또 못보내고 굴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좀 똑똑한 사람은 올려고도 하지않고 제일 고민꺼리예요. 그래 둘을 보냈는데 사위가 둘이 죽었어 일하다가..
• 김 : 시집을 네명을 보냈습니까?
• 양 : 네명 보내고 둘이 있는데 그것들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딸 여섯을...
나는 기왕 이제 고향에는 못가는 것이고, 후대들이라도 가야되는데 내가 살았다는것도 고향에다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만 고인이 되겠더라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둘이라도 좋은곳으로 보낼까 생각하는데 못보내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살고 한 번 해보자.
그전에 내가 무엇을 했냐 하면, 일본왜정때 중국에 왔다가 일부는 한국으로 가고 일부는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 편지를 내가 47년도 해방되고 난 다음에 47년도에 그 편지를 중국에서 온 편지를 받아 봤거든. 그때 고향을 니가 알고 있는거라, 중국 어디에 있는 것을 그래 밑에는 모르지만 ××× ×××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고향에 소식을 알려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다가 공간이 없는거라.
그래서 그때 북한이 한창 못살적에 지금도 못살지 못나는데, 두만강변지대에 무역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통행증을 내주는거라, 통행증을 내줘서 장사할려면 하라고 북한사람들도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가서 장사하라 하되 초청장을 달라, 북한에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초청한다고 오라고 그래, 초청장가지고 오면 증명서 떼어주겠다, 반대로 중국사람도 여

기서 초청하면 가고 그랬는데, 천상 그게 안되는거라, 왜 안되는가 하면, 나는 포로이기 때문에 안되는거라 , 이놈이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생각은 있어도 안됐지, 그러고 있다가 너뮤 심하니까 중국연변 조선족들 자치주에서 북한에 같은 동포인데 혈육인데, 지금 굶어죽는데 우리만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가 친척이 조금이라도 걸리면 지원해주라 막호소했거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지원해준거라. - 중 략 -
그래 거기가서 친척한테 편지를 보냈지 답장이 오는가 안오지 뭐... 안되겠다 건너가자, 이왕 거기가서 죽고 내가 살아야 몇 년을 살겠는가, 그래서 얘들 둘을 데리고 갔거든 밤에 건너온 거라.

• 김 : 두만강 넘으셨습니까?
• 양 : 예, 두만강 ××이라 ×××이라
• 김 : 10월 몇일날 이셨습니까?
• 양 : 10월 6일날인가 7일날인가 그럴겁니다.
• 김 : 넘어오실 때 두만강 건너는 것은 용의합니까?
• 양 : 아니지 큰일나지, 걸리면 죽어요
• 김 : 밤에 넘어오셨습니까?
• 양 : 열시나 열한시 된 것 같아요
• 김 : 강의 수심은 어느정도 입니까?
• 양 : 얕아 배꼽밑에 옷입고 능히 거널수 있지
• 김 : 초소 간격이 드문 드문 합니까?
• 양 : 군데 군데있지, 강변에다 굴을파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되면 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자기들도 배가 고파서 형편없어요. 군대가 배가 고파서 공급이 안돼서 순강냉이 밥에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다 건너가자, 한 10분이면 건너와요. 깜짝이라 강건너만 가면 다지 다라, 중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 김 : 경계병도 없습니까?
• 양 : 아무것도 없어

• 김 : 북한에서 마지막에 계시던 곳의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 양 : 은덕군
• 김 : 거기 계시다가 두만강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 양 : 이동이, 차로가면 북한차로 가게되면 4시간정도 가면되죠.
• 김 : 거기를 어떻게 이동하셨죠?
• 양 : 차를타고 기차 기차를 타는데..
• 김 : 기차를 타고 두만강까지 오셨습니까?
• 양 : 한심하게도 기차표를 끊자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郡에서 저郡 경계를 넘을 때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돼. 어다가서 떼는가 하면 정치보위부. 여기로 말하면 안기부. 안기부에서 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이런 백성들이 안기부에 들어 갈려면 어마 어마하고 증명 떼자니 대단히 바쁘지뭐 떼주지도 않고, 다 캐고, 열차가 오면 무조건 올라타는 거야
개찰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서 기차오는거 보고 타면되는 거예요, 거기는 평양이나 이런곳은 기차가 괜찮지만 국경지대나 이런곳 다니는 기차는 유리가 하나도 없어, 다 떼어가고 걸상도 없어요. 다 뜯어 떼버리고, 누우면 바퀴가 보이고 철길이 보이고, 그러지. 확 기차가 서면 승강대로 오르지 않고, 기차문으로 문으로 오르는 거야. 올라타면 기차가 가는데, 거기는 철도안전경찰 철도경찰이 증명서 검열을 하고, 역에서는 차료를 검열하고, 검열을 종일 돌거든 칸칸이 그러니 꼼짝도 못하는거예요. 증명서도 없는 사람들은 자꾸 안으로 고기 몰

듯이 몰아가지고, 들여보내지. 마지막에는 증명서 내노라는 것이야 공민증 주민증을 내놓으라는 거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공명증을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기차에 끄집어 들어가서 벌금받는거예요. 50원씩 벌금을 내줘야지 그래야 공민증을 찾지 찾아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지, 지금 그래요. 벌금을 받아야 자기들도 생활을 하니까 가족도 있고 먹을것이 없으니까 벌금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겁니다.

• 김 : 넣고는 보내주고..
• 양 : 넣고는 못 본척하면 되니까.....
• 김 : 50원이면 북한에서는 무엇을 살수 있습니까?
• 양 : 50원이면 북한에서는 배급가격이라고 있는데, 쌀을 사자면 야매로 사자면 한 되박이고, 그 사람들은 국정가격으로 사거든, 국정가격으로 사자면 열 되박사지요.
• 김 : 따님 두분 기차에 태우셨습니까?
• 양 : 그럼 태웠지 한사람 두사람인가...
• 김 : 벌금 내셨습니까, 150원
• 양 : 벌금냈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물어 보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물어 보거든 다 아니까. 단속해서 처리하기 곤란하지 않소. 죽이지도 못하고 먹여야지.
얘들 50원씩 벌금내고, 그것도 증명서 떼자면 뇌물을 바쳐야돼 그렇기 때문에, 의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는것보다 무슨 차로 역에가서 철도경찰한테 뇌물 바치는게 싸다고 싸, 완전히 질서가 없지.

• 김 : 강 건너서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 양 : 바로 친척집에 내가 주소를 가지고 갔거든요.
• 김 : 친척집에서 두달간 계셨습니까?
• 양 : 10월달에 나와서 12월 24일날 내가 여기 왔으니까.. 건 석달되지..
• 김 : 두달간 계시면서 불안하시지는 않으셨는지?
• 양 : 못살아요, 피해다녔지. ××에가서 조금있다 ××에가서 있다 ××에가서 있다가, 피해 다니다가 그다음에 도저히 북에 다시 들어가면 죽으니까, 할수 없이 이야기 했지요.
사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김 : 정부라면 대사관입니까?
• 양 : 국방부에....
• 김 : 어르신이 중국에 계실 때 동생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 양 : 내친척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친척하고는 편지가 왔다갔다 하니까 또 친척이 한국에도 다니고 하니 연결이 있었지, 내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는데 정말 내동생들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구, 북한은 전화할 줄도 모르고 전화도 없습니다. 회사나 사무실에 전호가 하나정도 있는데 교환을 찾아 코드연결해서 전화를하고 개인은 전화가 없어요, 전화라는게 없습니다.
• 김 : 중국에서 우리 국방부로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 양 : 나는 몰랐습니다, 동생들이 연락을 했지요.
• 김 :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에는 북한 탈북자가 지금 우리정부에서는 5천명이라고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10만명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혹시 포로로 가신분도 있을수 있단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 : 힘들다, 감시가 정말 심하다. 포로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내놓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중국에 친척이나 있으면 통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오기 때문에 주소를 알면 통해서 전달해 달라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 김 : 그 당시에 포로로 가셔서 주소를 기억을 못하면 연락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 양 : 그리고 포로라는게 뭐라고 말할까?
포로되서 끌려 내려오면서 휴식할 때 다른 부대에서 포로 30명을 데리고 내려가더라구 부대가 다르겠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사촌처남이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내려가는데 눈짓, 손짓만 했지 말은 못하고, 그래 포로수용소 강동에 가서도 올까하고 기다려도 안와 어떻게 됐을까? 포로가 된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착각도 아닌데 죽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잊혀져 버렸지. 그런데 여기와 보니 포로교환이 되서 왔더라고...

• 김 : 그때 교환이 팔천명정도 됐었죠?
• 양 : 그러니까 꼭 포로교환이 되는줄 알았지?
• 김 : 지금 북한에 계신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계실까요
• 양 :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할때는 내일 어떻게 일할것인가, 그런건만 생각하고 계속 코앞에 닥친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하니까 고향이 정말 그립더라고,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있느지 모르겠지만, 나 일하는 곳에 와서 통일이 언제되나, 통일이 꼭돼야 우리가 고향에 가겠는데. 이러다 죽겠다 언제나 가겠나 통일이 되겠지 안되겠나하고는 헤어지고 나는 이쪽으로 오고 말았는데....
그래 포로들도 세월이 가고 ... 얘들이 크니까 어떻게 돼 굴안에 다 들어갔지, 지금 대를 이어서 굴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공부도 못했지 공무원이 되겠는가 탄광밖에 없다, 탄광에서 끼리끼리 만나 약혼해서 그리 살아.
통일된다는 소리는 5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안됐는데, 내 생전에는 통일 안될 것이다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서 내가 여기 살다가 죽었다는거라도 알려라 그러고 있지 지금.

• 김 : 포로 되신분들중에 반정도는 돌아가셨다고 보십니까?
• 양 : 반도 더 죽었지요
• 김 : 휴전직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 양 : 한사람 두사람씩 앓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무더기로 죽는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북한은 오직 빨리 일을 시켜서 탄을 한덩어리라도 더 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써먹어야 되는데..
• 김 : 지원금 안 받으셨죠 정부에서 나오는...
• 양 : 이백이만원 나는 여기와서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맙게 고향에 돌아온건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죽어도 고향땅에 묻히니까 아무 한이 없는데, 여기 사람들이 친척이고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거지,
북에서는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다 해주니까 그쪽에서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쪽에서도 그럴꺼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얼마 나왔는가 자꾸 물어 보지뭐, 야 대단히 많이 나왔더라, 이백이만원이 넘게 나왔더라,
그랬더니 2백2만원은 한달 월급밖에 안되는데.....
• 김 : 월급은 반납하셨습니까?
• 양 :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이럴수는 없다고 해서.. 46년만에 나왔는데 이제는 수명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안에라도 조금 먹고 견딜 것은 줘야 되겠는데 이럴수 없다, 그래서 반납했지.. 내처가 지금 있는데 연금을 60만원씩 받다가 내가 나오는 날로 그만 끊겼어요.
• 김 : 연금중단이 언제되었습니까?
• 양 : 오는 날로, 1월부터
• 김 : 따님 두분은 어디 계십니까?
• 양 : ××에 있습니다. 여기 생활에 적응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배우고 또 하나는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김 : 몇 살입니까?
• 양 : 스물여덟하고 스물네살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말고 둘이라도 살리자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 김 : 남쪽에는 자식은 없었습니까?
• 양 : 딸 둘이 있었는데 죽고 없구만요, 그게 조금 서운합니다.
• 김 : 북한에서 귀순한 월남자들 귀순자를 지원하는 것하고 어르신처럼 이렇게 오시는것하고 비교해보면 귀순자가 많을 겁니다.
• 동생 : 면역식날 갔거든요. 군복을 입혀가지고는 훈련소에서 일등병을 받아 가지고 배치가 됐는데 내내 일등병이라 군복을 입혀서 보니까 한쪽 눈은 안보이지, 이빨은 다 빠졌지, 다리는 절지 누가봐도 상이군인이지 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대복을 입혀가지고 제대를 시키면서 정부에서 너무 대접이 소홀하더라고 일등병이 뭐냐고...

• 김 : 북에서 오셔서 북한에 살고 계시분들 생사확인을 해주신적이 있으시죠 전화연락 하고 계신분들이 계십니까?
• 양 : 그것도 내가 말하자면, 내가와서 내가 같이 일하고 같은 동네살고 같은반에 살던 사람도 있고 내가 알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들한테 알려주는게 좋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겠는가 가만히 놔두면 편할텐데, 그런데 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가슴에다 못을 박는게 아닐까 내가 이야기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는게 뭔가 하면, 아들이 군데에 갔는데 죽었는가 살았는가만이라도 알아 봤으면, 못오는 이상 그소식이라도 좀 알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아는 조건에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풀어주자, 내가 이걸 말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겠는가, 그럴수는 없겠다 고민 많이 했어요.
사람으로써 알려주는게 좋겠다해서 내전화번호를 알려줬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화 먼저하면 찾아오는건 좋은데 말로서는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나 형이 되는분이나 친척이 와라 형제간은 서로 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했지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찾아줬지.
• 김 : 몇 분정도 찾아주셨습니까?
• 양 : 서른하나나 둘인가 찾아 줬을꺼예요.
• 김 : 국회나 정부에게 바램이라든지 요구사하이 있으면 말슴해 주시죠?
• 양 : 내가 정부에다 계속 근심을 끼치고, 나 때문에.....

• 김 : 조창호, 장무환 어른 만나보신적 있습니까?
• 양 : 조창호씨는 두 번 만나봤고 장무환씨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 김 : 북한군은 전쟁에 대한 의지는 높다고 봐야겠지요?
• 양 : 말할수 없지, 일당 백 이거든 북한에서는 구호를 일당 백이라고 외쳐, 우리는 일당 천이라고 구호를 내걸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더라구.
• 김 : 나름대로 걱정꺼리가 있으시죠?
• 양 : 나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내가 여기와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자고 온것도 아니고 늙어서 북에서 죽는것보다 오직 조국에 와서 죽어야 겠다 그런 일념으로 온거지 다른건 생각하지 않아, 다른 것은 없고 딸들에 대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여기 넘어 올때도 북에 가족이 4~5명이 있지않습니까, 내가 넘어오면 남은식구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각오했거든.... 그래서 딸 둘이라도 살리자, 나도 고향에 가야겠다.
지금 바라는 것은 딸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똑똑한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 동생 : 애들 둘 데리고 넘어 온것도 정부에서 국적이탈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포로가 족이 아닙니까 포로 애들인데 이렇게 취급해서야 되겠는가 정부에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호적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식을 부모밑에 넣어야지 이탈주민으로해서 포로가 족이 아니라고 말을하니....

• 김 :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현행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겠네요? 통일은.....

• 양 : 통일은 북한이 이야기 하는게 김일성이가 이야기한게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연합국으로해서 현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는 통일국가를 세우자 그래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하지, 현정부는 그대로 두고 대통령도 두고 북한정부도 그대로두고 그위에다 정부를 국가를 세워서 통일국가를 해서 국제적인 회담에는 통일국가로 나가고, 정말 언듯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런데, 그 내막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수령님을 모시고 통일후 서울의 광장에서 만세를 부르자 말하는 후면에는 입에는 사탕을 물고 손에는 칼을 들고 내미는 거야 그게 됩니까. 적색통일이 아닙니까. 그런 구호가 나오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구호를 두니까 믿지 못하는거다 그래서 통일은 힘들다.

• 김 :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 양 : 경제협력이나 정주영씨도 가고 하니까.. 흡수통일은 절대 안된다. 그러는데 되고 안되고는 국가에 달려 있고 북한주민들도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발전됐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다. 그다음이 대만이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개방되어서 왔다갔다 하니까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 또 왔다갔다하거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짐작할 수 있어요.
나도 올 때 전자하고 자동차공업이 발전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보니 거기서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상상을 못하게 발전했어요.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 누가 굶어 죽자고 그러겠어요 삶을 찾아서 오자고 그러지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가지요...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이런 회사들이 또 간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국민들속에서는 넘어가는거라 아무리 사상교육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젊은세대들은 새로운 것에 민감하거든, 북한실태가 정말 인육을 먹는 세상이거든, 사람고기를 먹는단 말이예요 지금. 그것을 내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절대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론이라는게 당 중앙위원회에서 보도을 일체 안내보내고 유익되는것만 내보내는데도 새어나간다구.. 예를들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다는지. 인민무력부장은 복통이 터져 죽었다더라, 굉장하지 그러니까 발전된 모습을 그들이 알면 내가 정치적 식견을 없는 사람이지만, 국방위원장으로 지금 김정일이가 추대되고 주석직을 승계하지 못했거든, 주석직을 김정일이가 꼭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군사독재로 만들어 버린거야, 꼼짝못하게, 여기로 말하면 데모나 이런게 일어날까봐 군부대만 계속 김정일이가 방문하는거지, 그래 사상의식을 주고 군대를 틀어쥐는거라.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그런식으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거라..
주민들이 중국이 60년대 못살았거든 신발하나 없었거든 북한에 노동할 때 신는 신발을 막사가고 떨어진 것도 다 가져가고 했는데, 등소평이 정권잡고 계획대로 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 우리도 개발해야 되는데 중국처럼 왜 못하는가, 중국은 생산량이 많이나고 식량이 많이나기 때문에 잘살지 않는가, 그런 여론도 암암리 수집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김정일한테 보고가 되면 김정일은 무엇을 내놓는가 하면 당신들의 잘못이다. 생산수단이라든가 계획개방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교양이 부족하다, 그사람들이 자기일처럼 하게 만들지를 못하느냐, 김정일은 사회적 부가 생기는데 자기몫도 있다 국가가 장악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하면 그게 다 당신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니 일을 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떨어지는거야 말할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650만톤 750만톤씩 생산한다고 호통을 쳤는데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김일성은 우리가 조금만 더하면 천만톤을 내지 않겠는가 천만톤 고지를 점령하자고 그러는데 수포로 돌아갔거든,
지금 450만톤도 못낸다고, 국가에서 생산하는 총생산량이 450만톤 알곡으로 그러니까 큰 문제라고.

• 김 : 김정일의 통치기반이 약하니까 군부를 장악해서 군부대를 방문하고 군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국가전반에 거쳐 힘을 발휘할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는 어느정도 인지요?

• 양 : 지지라는게 군부대 일반주민들은 김일성만큼 지지를 못받고 있지, 김일성 살아 있을때는 이렇게 까지는 힘들지 않았거든, 김정일이가 집권하면서 다 굶어죽는다, 김일성이가 죽는날부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 버린거야. 흉년을 막을 대책은 없고, 저수를 하던가 농약이 있나 비료를 생산하면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없고,
보니까 미국은 핵기지 관계로 자꾸 달리는 판이고 기름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생산하고 안주면 그만이고 그렇지, 지금 아주 한심해요. 그렇지만 죽어도 자기 체제는 내놓지 않을거란 말야. 그래 지금 김일성이가 할 때는 맑스 레닌주의를 보급했거든. 참 잘해놨단 말야 똑같이 사람이 낳아서, 잘먹는 사람이 있고 못먹는 사람이 있는가 일도 똑같이 하고 먹는 것도 똑같이 먹자, 자본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게 점점 나오다가 후르시초프가 무엇을 내놨는가 하면 소련공산당 21차 대회에서 개인숭배라고 스탈린을 때렸거든, 신문을 보니까 소련신문 그대로 숭배에 대한 스탈린에 대한 것이 노동신문에 다 났더라구, 개인숭배는 북한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상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 나왔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뒤부터 후르시초프를 수정주의자로 몰더라구,
그이후 소련과 등지고 살았는데 소련도 1차 공산주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산주의로 들어 갈려면 엄청난 경제가 발전해야 되거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자 구호가 그런데 그게 되자면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백년이 더 걸려야 돼, 그런데 초보적인 것도 않했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하자고 하니까 슬슬해야지 당장하면 부러지거든 절대 공산주의가 못되거든...
앞으로 자기 체계를 넘겨주지 않아요, 흡수통일이기 보다는 남한에서 경제를 통해서 장악해야 됩니다. 김정일이 자기 체계를 몇 년이라도 유지할려고 한다면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꺼꾸러라지고 말아요.

• 김 :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김정일체제를 유지할려면 경제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 양 : 구호를 보니까 잘 써왔더라구 "위장평화 경계하고".....
내가 여기에 지금 있어도 북한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 노인들 생각하면은 입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정치는 우선적으로하고 경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그러니까 64년도에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엇을 내놓았는가 하면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연계시키겠다고 했거든 그때부터 국가예산을 군사에다 다 넣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식량이 부족하게 된거지, 그거하고 나서부터 배급을 한달에 나흘 것을 떼고 지급했죠.

• 김 : 무슨 조치 말입니까?

• 양 : 그러니까 국방건설을 잘해야 남으로부터 자주국방을 한다. 북한 자체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 예를들면 아프리카등 이런 나라들을 끌여들었지 달러를 많이 줘서 일반 국민이나 모르는 주부들도 그래 우리가 국방건설에 일년만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굶어죽을 지경까지는 아닐텐데, 그 다음에 김일성이 우상화 작업도 그래 동상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세워요. 달러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어, 만수대 의사당 같은 것은 불란서, 이태리 제야, 모두 외국수입이야 달러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어, 세계에서 최고하면 뭐가 나오나 소용없는 짓이지, 동상같은 것도 동으로 했다가 금으로 입히고 계속 또 새로입히고 또 입히고 북한에서 나지도 않는데 조금 번 달러를 다 그런곳에 사용하니까 안굶어 죽을 수 있어...

• 김 : 기타 에피스드 같은 것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 양 : 북한에서는 선전하기를 남한은 경상도판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꼼짝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라디오라는것도 없어요 중앙방송국에서 통제를 하니까 집에다 스피커 달아놓고 그걸 통해서 듣지 칼라TV는 없습니다. 혹시 간부들이 고위층들 한테 있을지는 모르지만, 흑백 TV도 80년대 들어왔는데 간부들이 다 차지하고 그랬지, 흑백TV도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파는 것 조금하고, 주민 가구에는 20대 1정도 그것도 전기가 모자라 밤이면 다끄지 김일성이가 말하는 구호가 몇 년일하면 고기국에 밥말아 먹고 열심히 일하면 비단옷 입고 기와집 산다고 신년사에 40여년간 선전해 왔지만,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났잖아, 부대도 마찬가지야 우두머리가 다 도둑질 해먹어...

• 김 : 생활수준은 어떻습니까?

• 양 : 남한에서는 살 뺄려고 밥을 안먹는다고 하는데 오늘 신문보니까 북한에는 뚱뚱하고 살이 찐게 미인라 하지 않는가, 간부들은 살이 쪄서 배가 나왔어,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은 수입쌀은 안먹어 북한쌀이 최고라 이거지, 그런데 북한 사람들 주민들은 먹지 못하니까 풀뿌리 나무 껍데기를 캐먹고 살고 있지, 내가 아는 한 노인은 강냉이밥을 실컷 먹어 봤으면 좋겠다고 원했는데 그거 한 번 못먹고 죽었어.....
돈이 없어 저금해 놓은거 은행이 돈이 없어 주지도 못하고, 쌀이 없어서 탄광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사람들은 200그램씩 주면서 나오라 해 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겨우 겨우 유지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4시간 면담내용중 양순용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탈출경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의 면담내용은 실지 않았고, 특히 생소한 북한 언어와 단어의 의미가 우리와 다른점 때문에, 정리하는데 애로점이 되기도 했으나, 가급적 그대로 수록하였다.

<참 고 자 료>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한국전쟁피해통계집, 국방군사연구소, 1996.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1.
한국전쟁휴전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89.
한국전쟁.요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남북한관련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국방사연표(1945-1990), 국방군사연구소, 1994.
한국전쟁사연구(1-2집),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6.
북한연표(1945-1961), 국토통일원,
성곡논총 제29집2권, 1998, 북한억류 한국군포로의 송환(허만호).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미송환 국군포로들의 현황), 김남준,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제7회 통일정책 대토론회.
북한 1998.6,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정책, 이정민(전 조선노동당 간부).
한국전쟁일지, 군사문제연구소, 1991
민족정론 96.3, 이제라도 송환 요구해야 한다, 오문균.
자유공론 98.6, 국군포로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김명기.
주간조선 1997.10.16/ 98.5.7/ 등
시사저널 1997.10.16/등
각 일간지 탈북자, 귀순자, 생환 국군포로의 증언 보도자료.
SBS/KBS/MBC 국군포로관련 방영테잎.
양순용씨 98.11.5 면담.